

나가 아니라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독과점 현상을 허용할 것인가, 독과점 방지를 위해 공정 경쟁의 원리를 유지할 것인가로 압축될 수 있다(물론 공교육 강화와 기능 제고라는 문제가 단순히 재원 확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가 풀기 어렵다고 해서 사회가 이런 노력을 포기한다면 교육을 매개로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에 제동을 걸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교육적 경쟁 조건의 공정성 시비를 가려내는 것으로 오늘의 교육 개혁이 당면한 전체 문제가 압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다. 사교육을 활성화할 것인가 공교육을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는 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깔려 있다. 막연하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불안하게 감지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해온 시스템 전체가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실 붕괴' 현상(교사들과 학생들간의 문화적 장벽, '왕따' 현상, 수업 마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심화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최근에는 학교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학교 붕괴' 현상에 대한 공론화와 더불어 교육 시스템 전체의 위기와 붕괴 조짐을 지칭하는 '교육 붕괴'에 관한 담론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총체적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진단과 처방은 물론 교육 전문가들과 시민 사회 차원의 대안 제시조차 국소적인 문제와 대안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연구와 논의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전망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관련자들의 무능력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늘날 학교 붕괴 및 교육 붕괴의 현상이 (싫든 좋든) 교육·제도와 교육 정책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붕괴 이후 가속화되어 온 전지구적 신자유주의화와 기술 혁신이 가져온 '지식 기반 사회'로의 대대적 이행이라는 문명적, 사회 시스템적 변동과 같은 거시적 차원과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부터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본격 시행, 그리고 국립대 구조 조정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논쟁 등에 이르는 여러 수준의 교육 개혁 관련 쟁점들을 속히 타결하는 것이 시급한게 아니라, 오히려 이 논의들을 거시적 사회 변동의 수준과의 연관 속에서 재구성하고, 각각의 논의들에 깔려 있는 대전제들과 상관관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닐까 싶다.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들의 거시적 재구성과 대전제들의 타당성을 발본적으로 검토하지 않고서는 어떤 국소적 해결책도 절충과 반복, 그리고 단순한 시간 지연으로 끝나게 마련이어서, 결국은 총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 악화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 개혁과 사회 시스템 변화라는 두 수준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는 형식적으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a) 우선 사회 시스템이 급변하고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저런 요구가 있으므로 교육이 이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 (b) 반대로 교육적 차원에

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학교교육을 약화시키고자 한다"(157-158) "그러나 과당경쟁 질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아무런 문제 해결의 방향도 제시할 수 없다. 학교교육이 바람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를 열심히 경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개인에게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쟁만 나무란다면 이는 결국 경쟁구조를 왜곡하여 특정한 세력에게 유리한 경쟁구조로 경쟁을 재편하고자 하는 기도에 본의 아니게 동조하게 된다. 문제해결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무엇을 위한 경쟁이고, 경쟁구조가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적절한지를 살피는 것이다. 경쟁의 목표가 대학 진학이라고 이야기하면 학교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경쟁의 목표는 학교교육을 잘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쟁을 통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한다면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질서를 세워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생활 수준에 속하는 학생과 가장 높은 생활 수준에 속하는 학생의 경쟁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많은 청소년들을 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자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159-160) (<학교붕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위원회 엮음, 푸른나무, 1999)

서 원칙적으로 이러저러한 것이 요구되므로 사회가 이런 요구를 마땅히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c) 다른 하나는 사회 변동의 중장기적 전망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저런 위험이 예측되므로 미래 사회를 끌고 갈 인력을 키우는 중차대한 일인 교육이 목전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에 급급할 경우 미래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 하에 현재의 교육을 이러저러하게 바꾸어야만 한다고 보는 경우다. 문제를 단순화시켜 보면 그간의 논의들은 대체로 (a), (b)의 입장에 머물렀던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입장들은 미래를 위한 전사회적 투자에 해당하는 교육 문제를 현재 중심적 실용주의나 추상적인 당위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c)의 관점에서 그간의 쟁점들을 재구성해 보고, 기술 혁신의 현 추세로 보아 거시적으로 사회적 노동의 대대적인 감소가 예상되나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정책을 전 사회적 차원에서 준비해 나가지 않을 경우 20 : 80 사회로의 퇴행이 예측되므로, 그런 준비에서 가장 큰 몫을 담당하게 될 학교 교육 단계에서부터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육 과정('문화 교육')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현재의 위험을 진단하고 대안을 전망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준비하게 하여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의 이행6))을 위한 가교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쳐 보이고자 한다.

2. '학교 붕괴' 담론의 유형들에 대한 검토

우선 그간의 논의들을 거시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겠다. 다만 여기서는 지면상의 한계로 '교실 붕괴'와 '교육 붕괴' 관련 담론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겠다. 대신 '학교 붕괴' 문제를 중심으로 학교-사회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두 문제를 언급하기로 하겠다. 99년 11월 전교조의 참교육실천위원회에서 낸 <학교 붕괴>라는 책자를 보면 '학교 붕괴'의 원인 진단과 대안을 논하는 여러 담론들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다7). (1) 우선 학교 붕괴의 원인이 탈산업 사회의 등장에 따른 학교의 적응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런 입장을 보다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자초된 학교 붕괴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수순이며 대안으로 탈학교 제도와 학교 축소 전략을 주장할 수 있다), (2) 사회화 과정을 달리하는 세대간 문화 갈등에서 원인을 찾는 입장, (3) 정부 주도의 교육 개혁 실패에 원인을 두는 입장, (4) 권위주의적 학교 체제에 원인을 두는 입장, (5) 공교육 제도의 위기에서 원인을 찾는 입장이 그것이다. 이런 유형화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이한 입장 차이를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5가지 주장 각각의 타당성이 아니라, 5가지 주장들 간의 전체적인 관계이다.

당시 책자를 검토해 보면 전교조 참교육 실천위원회에서는 대체로 (3), (4), (5)의 입장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전교조를 포함하여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대다수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입장에서 제시되는 대안은 (3) 위로부터의 개혁에 대응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4) 개발 독재 시대의 병영적 학교의 관행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학교 민주화, (5)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학교 붕괴의 원인이 학교라는 시스템 내부에 있다기보다는 외부, 특히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정치적 원인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반해, (1)과 (2)의 입장은 외부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변화(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학교에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의 학교 제도를 축소하면서 학교 유형을

6) '노동사회'와 '문화사회'의 개념과 이행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글들을 참조할 것. 『문화과학』 15호(98년 가을호)의 특집 "문화와 경제", 『문화과학』 17호(99년 봄호)의 특집 "문화사회를 위하여", "문화사회를 위하여"(문화과학사, 1999), 『노동의 종말』(제레미 리프킨 지음/이영호 옮김, 민음사, 1996) 등
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위원회 엮음, 『학교붕괴』, 푸른 나무, 1999, 8-14쪽 참조.

다양화하거나, 학교 문화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같은 (1)-(2)의 입장들은 주로 교육정책 전문가, 정부나 기업, 학생과 학부모들, 일부 교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각기 처한 입장에 따라 5가지 중의 어느 하나 또는 여러 입장을 동시에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같은 정부 관료라 해도 처한 입장과 사안(가령 자립형 사립고)에 따라 (1)의 입장에 기반할 수도 있고(교육인적자원부), (5)의 입장을 견지할 수도 있다(서울시 교육감). 그러나 필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학교와 외부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상의 상이한 두 묶임, 즉 (1)-(2)의 묶임과 (3)-(4)-(5)의 묶임 사이의 대립이다. 이런 대립은 앞서 언급했던 학교-사회의 상호 관계를 판단하는 두 가지 방식(a, b)과 매우 유사하며, 학교-사회의 관계를 환원주의적이거나 일면적이고 정태적이며 현재 중심적인 방식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히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와 사회의 상관 관계는 보다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동태적이고 변증법적(또는 '가추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인관 관계의 분석도 정치, 경제, 문화적 차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중층결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문제들 사이에도 시간적 격차가 있고 또한 경제적/문화적 변화에 의해 수정되며, 역으로 경제적/문화적 변화가 새로운 정치적 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 경제학적 접근만이 아니라 '문화 경제'와 '문화 정치'라는 '절합적'인 분석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3)-(4)-(5)의 묶임과 (1)-(2)의 묶임을 함께 '절합'하여 지난 30여 년간 우리 학교 교육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다.

1) 우선 (3)-(4)의 진단은 70-80년대 우리 교육이 지닌 특수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에 매우 적합하다고 본다. 개발 독재 시대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행정 체계가 위에서 아래로 강제된 획일적인 교육 정책은 밑으로부터 제기되어 온 다원적인 요구와 사회 변화의 흐름을 학교가 능동적으로 선취하거나 수용하여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할 기회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90년대에 들어 가시화되기 시작한 학교 붕괴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행은 문민 정부 이후 현재까지도 철저히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세계적 현상으로서의 학교 붕괴가 주로 (1)-(2)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만든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우리 교육의 특수성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전근대적인 문화의 부정적 측면(소위 '봉건적 잔재')과 함께 개발 독재로 인해 왜곡된 한국적 근대화 과정의 복합적 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80년대 중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비판적 교육운동은 주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그에 반해 (1)-(2)의 진단은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가시화되기 시작한 '교실 붕괴'와 '학교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다. '문민 정부' 이후 사회가 정치적(절차적)으로 일정하게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변화해 왔던 데 반해 학교 교육이 이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따라잡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 학교의 사회적 적응 실패의 일차적 원인은 70-80년대의 권위주의적 관행의 잔존에서 비롯되지만, 현상적으로는 학교가 공급하는 지식의 내용과 사회적 수요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교사-학생들 사이에서 문화적 격차가 확대되고, 학생들은 학교 교육보다 매스미디어와 대중 문화에 관심을 둬으로써 학교의 존재 이유 자체까지 의문시되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3)-(4)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의 새로운 원인이 추가됨으로써 90년대 후반에 들러 '학교 붕괴'가 가속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런 맥락에서 보면 (3)-(4)와 (1)-(2)의 진단은 서로 대립되는 진단이라기 보다는 우리 교육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입체적으로 동원되어야 할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남는 것이 (5)의 경우인데, (5)에서 주장하는 공교육 강화론이 반드시 (3)-(4)의 진단과만 묶여야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오늘날 정치적 민주화(물론 절차적 민주화에 불과하다 하더라도)가 상당 부분 진전된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1)-(2)의 진단과 (5)의 대안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3)-(4)의 원인이 일종의 제도적, 심리적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과거의 주된 원인이었던 데

반해, (1)-(2)의 주장에서 지적되는 현재적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어떻게 (5)의 입장이 주장하는 공교육 강화론과 같은 대안으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문제라는 얘기다. 이런 새로운 시나리오만이 공교육 강화론에 대중적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상 (1)-(2)에서 지적되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추세의 확산은 그 구체적인 경로나 방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으나 분명히 근대적인 학교 제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 제도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초중고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 전체의 학제나 학교 유형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달라질 수 있고, 학위와 교육과정, 교육방법, 나아가 학문편제까지도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교교육의 제도적 형태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과 공교육 대신 사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과는 범주적 수준이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2)의 주장에 근거하여 공교육 약화나 해체/사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학교 붕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서의 교육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일종의 무정부주의적 주장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가령 현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 혁신에 필요한 지식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교육 정책의 주된 목표가 될 경우 기업이 직접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1)-(2)의 입장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경우 사회적 교육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시장 논리에 떠맡겨 버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된다. 이런 주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것이며, 결국은 정부의 존재 근거마저 부정하는 논리로 귀착될 수 있다⁸⁾. 이런 주장은 지난 수백년에 걸쳐 200년간 근대화 과정에서 그나마 성취된 학교 교육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자는 것이므로 이런 모순점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정부와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교육 개혁의 방향에는 은연중에 이런 주장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유형 분석을 통해서 시사되듯이 '지식 기반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대대적 사회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 붕괴' 현상은 교육문제를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 변동에 대한 해석 및 정책 결정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따라 자칫하면 사회적 시스템으로서의 교육 제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을 커다란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분기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특히 미시적-거시적 수준에서 어떤 부정적 또는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 사회 성원 대다수가 무감각하거나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기준을 가지려면 (1)-(2)의 입장에서 논거로 삼고 있는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그에 수반될 사회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런 변화 속에서 사회적 시스템으로서의 학교 교육이 말아야 할 새로운 역할이 존재하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3. 지식 기반 사회와 학교 교육

지식 기반 사회가 과거의 산업 사회와 다른 형태의 노동/행위/사고 양식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 대

8) 정부 기능 최소화나 무정부주의적 주장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종종 제기되어 왔으나, 유토피아적 요구에 다름 아니다. 90년대에 들어 권위주의적 국가의 실패, 특히 세계적으로는 '역사적 공산주의'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은연중에 이런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런 논리는 시장논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뿐, 20:80 사회로의 이행을 제어할 아무런 현실적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국가/정부/시장은 다만 형태가 변할 뿐인 권력관계와 교환관계라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론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게 되면 사회이론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정부/시장의 존재 자체와 그 형태변화를 혼동하게 되면, 신자유주의조차 모든 사회적 수준에서 시장논리 확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정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탈주와 변혁의 이분법을 넘어서" (『문화과학』 25호, 2001년 봄호) 참조.

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하지만 지식 기반 사회가 되면 산업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이 한꺼번에 해소될 것이라든가, 이런 사회는 산업 사회와 연속성이 없다고 착각하면 곤란하다고 본다. 오히려 지식 기반 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은 오히려 산업 사회 이래 지속되어온 자동 기술화의 축적과 첨예화의 사회적 결과로서, 자동 기술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사회화하지 않는 한 실업이 확대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은 매번 기술 혁명의 단계가 있을 때마다 그랬듯이 또한 지난 90년대 이래 세계적인 추세가 보여주듯 쉽게 예측할 수 있다⁹⁾.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처럼 제3차 산업 혁명에 따른 자동 기술화는 유례없는 방식으로 노동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자유 시간 속으로 방출된 대다수의 인구들에게 생산성 향상의 성과의 일부를 재분배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자동 기술화는 노동의 종말과 함께 문명의 종말(묵시록적인 SF영화들이 그려보이는 문명의 내파)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0세기 초중반에 나타났던 2차 산업 혁명 과정에서는 자동 기술화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력 방출을 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직업군의 창출로 흡수할 수 있었다면, 이번 3차 산업 혁명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분야에서 대규모 실업을 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지식 산업 분야조차 자동 기술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서비스업에서의 실업 확대분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근본적이고도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혁명과 산업 혁명 사이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간 동안 생산성 향상이나 생산성 향상분의 사회적 분배가 중요한가를 놓고 양자 택일 식의 대립과 선택, 절충을 이룰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이 문제가 양자 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자동 기술화가 과거와는 달리 기하급수적인 가속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현 시점에서는 과거와는 크게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사회적 부와 기회의 재분배 체계를 구성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 개혁과 사회 변동의 역동적 관계가 커다란 분기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사회적 양극화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준비하는 교육개혁인가 또는 교육의 양극화를 매개로 사회적 양극화를 확대하는 방향의 교육 개혁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분기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닐 포스트먼 같은 사람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에서 점점 팽배해가고 있는 두 가지 경향, 즉 하이테크놀로지와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공교육의 종속이 결국은 '교육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¹⁰⁾. 만일 경제적 가치나 교육 공학적 수단만이 교육 목표를 지배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친 공

9) 제레미 리프킨, 같은 책 참조. "비록 일정표를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는 자동화된 미래의 확실한 코스에 놓여 있고 21세기 초반에는 최소한 제조업에 있어서는 거의 무노동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서비스 분야도 비록 자동화가 느리겠지만 21세기의 중반 경에는 거의 자동화된 상태로 근접할 것이다. 출현하고 있는 지식 부문은 대체된 노동력의 약각 부분을 흡수할 것이지만 실업 증대의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373쪽). "미사용 노동인력은 다가오는 시대의 중요한, 광범위한 현실이며 모든 국가들이 제3차 산업혁명의 충격의 와중에서 문명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당면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가 될 것이다. 문명화가 수억 노동자들의 재능, 에너지, 자원을 건설적인 목적에 재할용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빈곤 증대와 무법천지로 해체되어 버릴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공식노동에 대한 대안을 발견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핵심적인 과업이다. 후기 시장 시대의 대비는 제3부문과 공동체 생활의 재건에 대한 보다 많은 주의를 요구할 것이다. 생산성에만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가 용이한 시장경제와는 달리 사회적 경제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환원될 수 없는 인간 관계, 친밀감, 동료 의식, 형제애적 연대, 봉사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기계가 완전히 침투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3차 산업혁명으로 대체된 노동자들이 공식 시장에서 자신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무용하게 된 이후 생활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게 될 피난처가 될 것이다."(373-374쪽).

10) 닐 포스트먼 지음/차동춘 옮김, 『교육의 종말』(문예출판사, 2001). "『종말』의 의미는 헨리 퍼킨슨의 '불완전한 만병통치약'에서 예견한 바 있는 교육의 사영화, 또는 패럴먼이 '학교의 퇴장'에서 예견하였던 테크놀로지로의 공교육의 종속을 뜻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학교교육이 크리스토퍼 휘틀이 제시한 대로 기업에 의해 관리되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는 점이다...하지만 이 책은...위에서 언급한 어떤 가능성에도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은 본질적으

교육 체계로서의 학교 교육은 사실상 불필요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직접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사이버 교육으로 물리적 공간을 갖는 학교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학교 교육이 앞으로도 계속 존립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단순한 경제적 가치 창출의 도구적 수단이라는 데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닐 포스트먼은 학교가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문화적 가치의 창출과 전달이라는 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형태의 교육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¹⁾. 그의 주장에 기대어 학교의 존재 이유와 학교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1) 우선 오늘날과 같은 지구화/정보화 시대의 큰 골치거리의 하나는 정보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의 과잉이라는 새로운 문제다. 지난 100년 동안 연속된 기술 혁명의 진전으로 인해 오늘날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보다 학교 밖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고, 초고속 인터넷과 결합된 멀티미디어 시대가 열림으로써 학생들은 점점 더 '정보의 바다'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과거와 같은 '정보의 독점 기구'나 신자유주의적인 '정보의 편의점'이 아니라 정보를 선별하고 조합하는 데 필요한 반성적 판단력과 자동 기술화와 정보의 홍수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또한 학교 교육은 이질적인 성원들이 함께 모여 인류가 축적해온 문화적 가치 창출의 총체가 지닌 '의미'에 대해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의미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강력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이 확산되던 초기만 해도 온라인 동아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프라인의 소통 방식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사회적으로 팽배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곧 온라인 동호회가 지속되려면 오프라인 미팅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온라인상의 소통이 확산될수록 오프라인상에서 새로운 방식의 결속이나 연결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이버 대학의 경우나 e-비즈니스의 경우에도 공히 해당된다. 이런 문제는 학교 교육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학교 교육의 목표가 만일 개인으로 하여금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학습토록 하는 데에만 집중된다면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이 보다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개인과 타인을 전면적으로 연결시키고, 개인적 관계를 넘어선 사회적 관계를 '체화'하게 하고, 개인간의 경쟁을 넘어서 사회적 공생과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하며, 나아가 자연과 사회의 공생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방식의 정신적, 육체적 훈련을 가능케 하는 공동의 '장'이라는 고유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적 파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날이 갈수록 학교는 가장 긴 기간에 걸쳐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을 학습하고 체화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장이 될 것이라는

로 공학적인 문제이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중요한 문제이지만, 학교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 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이 있는지, 학교의 규모는 어떠한지, 교실당 학생수가 줄고 있는지, 더 많은 교사를 고용하기 위한 교육재정의 여유는 있는지,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국가재정이 하향되는지 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왜'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우리는 기차를 제시간에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곳으로 기차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기차의 운행시간표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91-92쪽)

11) 닐 포스트먼, 같은 책. "제3차 테크놀로지가 만능인가"(62-87쪽) 참조. 여기서 포스트먼은 기술 지상주의적 관점에서 사이버 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주장은 학교를 '정보의 편의점' 정도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학교에서의 컴퓨터의 사용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에 대해 보다 진지한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요지는 학생들로 하여금 컴퓨터의 노예가 되거나 컴퓨터로부터 답을 구하기보다는 컴퓨터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컴퓨터가 개인 가치와 개인적 문제 해결만을 강조하도록 만드는 편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통해서든 아니든 사회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의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점에서 다른 사회적 공간과는 큰 차별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말하자면 학교 교육은 기술 공학적, 경제적 실용주의와는 다른 특별한 인간학적인 목적, 즉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해,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 설정과 기준을 탐구하고 모색하고 학습한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다. 이런 맥락에서 닐 포스트먼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학교 교육을 조명하기 위해 우리 어른들은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공학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적인 문제이다...하지만 교육의 공학적인 측면들은 너무나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의미 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어떤 의미에서 이런 유의 접근은 교육을 사소한 기능적 기술 습득에 관한 것으로 천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많은 교육들이 기능적 기술의 습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으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이 되려 한다면, 다시 말해 어떤 안목이나 개념, 또는 비전을 가짐으로 해서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조명하고자 하는 철학의 문제이다.”¹²⁾

9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기술 공학적이고 실용주의적으로 편향되어 가는 정규 교육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교사와 학부모들에 의해 대안 학교 운동이 서서히 확대되어 왔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고려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실험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대안 학교 운동은 문자 그대로 제한된 시공간에서 특수한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므로 정규 교육 전반의 개혁으로 직결되기 어렵고, 공교육 ‘대’ 대안 학교라는 식의 쟁점으로 잘못 빠지면, ‘탈학교론’과 연계되어 공교육 시스템 축소론으로 귀착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 학교인가 대안 학교 운동인가라는 양자 택일이 아니라 대안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병행하여 대안을 모색하려는 철학적 열정과 문화적 전망 구상이 정규 학교 제도 내에서 개진되도록 자극할 새로운 사회적 발의가 있어야 한다.

4. 교육 개혁을 위한 대전제

위의 학교붕괴 담론의 유형과 관련하여 분석했듯이 지식 기반 사회로의 변화와 문화 지형의 대대적 변동에 따라 학교 교육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7차 교육 과정 시행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과목에 수준별, 단계별 교육과 선택 과목의 폭 확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 자유화, 국립 대학 구조 조정과 대학 자율화 등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정책은 대체로 교육에서의 ‘탈규제화’와 수용자 중심 교육이라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90년대의 정책 흐름을 전반적으로 짚어 보면 사실상 지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시장적 요구에 일방적으로 학교교육을 종속시키려는 경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교육 정책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93년 문민 정부 출범 이래 ‘정보화’ 담론의 팽창과 교육 개혁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었던 것이나, 최근의 진행중인 BK21 사업이나 6대 국가 전략 학문 분야의 설정 역시 경제주의적이고 기술 공학적인 관점에서 학교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 정책은 아무리 선의를 가졌다고 해도 기껏해야 학생들에게 현실이 요구하는 직업적 기술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제공하지는 소박한 주장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런 식의 선의는 오히려 공교육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할 뿐인 바, 학교 교육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면 차라리 기업이 직접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가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 것도 이런 모순점에서 비롯된다. 학교 교육의 근거를 새롭게

12) 닐 포스트먼, 같은 책, 19-20쪽.

게 세우지 못한 채 교육의 수월성이나 교육의 경제적 기능만을 제고하려 하는 것은 목욕물을 갈다가 아이까지 통째로 버릴 위험을 확대한다.

그와 반대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교육 정책의 탈관료주의화, 교육 현장의 민주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 요구를 제기한다고 해도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현재의 왜곡된 학교 교육의 목적과 존재 근거를 근본적으로 문제삼고 학교의 중심 기능의 재조정, 대안적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한 철학적 근거 마련과 문화적 비전 제시,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교과내용의 구성에 착수하지 못한다면, 학교 붕괴로 고통받는 교사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학교 재건에 참여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기가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 없이는 정부로 하여금 교육 자치의 확대, 교육 현장의 민주화, 공교육에 대한 투자에 열의를 갖도록 하는 일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움은 사실상 오늘날 학교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가 학교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한정되고 있다는 데에서 연유하고 있다¹³⁾.

물론 대개의 논의들이 학교 교육의 목적과 존재 근거에 대해 논쟁을 피하고 오직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만 논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학교교육이 자본의 논리로부터 ‘절대적’ 자율성이 아니라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남는 것은 경쟁력 향상이 우선인가 공정한 경쟁이 우선인가를 문제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20:80 사회로의 위험, 생태파괴의 위험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의 논리 중심의 생산성, 경쟁력 개념을 대폭 수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과 그 작동원리를 세워야 할 필요성에 근거해 보면, 오늘날 학교가 사회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교붕괴=공교육 해체=교육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나 기업이 급하다고 주장하는 사회적 요구에 깔려 있는 자본중심적 시장 경쟁의 원리를 대폭 수정해야(역사적으로 명멸했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역사적 공산주의 등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큰 과제에 도전해야만 한다¹⁴⁾.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성 개념 자체의 재구성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생산성 향상과 분배적 정의의 관계에는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 제로섬 게임, (2) 포지티브섬 게임, (3) 마이너스섬 게임의 경우가 그것이다. 단순화하여 설명하자면, 어떤 사회가 이 3가지 중 어느 경우를 채택하게 되는가는 바로 생산 과정(= 원자재 + 생산수단 + 노동력)에서 ‘생산성’의 개념을 생산의 3 요소 사이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전체적인 관계라는 차원과 연관시킬 것인가 아니면 오직 협의의 생산 수단의 차원에 한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후자의 관점에서만 보면 기술혁신의 시기에는 한정된 사회적 총자본을 생산 수단의 기술적 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하므로 노동력 재생산의 불균형이나 원자재를 제공하는 자연 환경의 파괴라는 문제는 방기되기 쉽다. 이런 방법은 단기적으로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나 분배적/생태적 정의는 방기한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방법으로 분배적 정의에 중점을 두고 평등주의적 방식으로 노동력 재생산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데에만 우선적 관심을 둘 경우 생산 수단의 생산성 향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둘 중의 한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제로섬 또는 마이너스섬 게임이 불가피해진다(역사적 자본주의의 한 전형으로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론과 역사적 공산주의의 한 전형으로서의 스탈린주의가 그것이다). 이런 방식의 공통점은 생산성 개념을 요소주의적으로, 그리고 특

13) 닐 포스트먼, 같은 책 참조. “학교를 사영화해야 하는가? 국가적 평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TV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 독서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 중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이목을 끈다. 하지만 그것들의 공통분모는 학교의 존재목적에 대한 무관심이다... 이 책의 역설적 제목 ‘The End of Education’이 시사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목적이 없이는 학교교육은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15쪽).

14) 이에 관해서는 줄고, “근대화/탈근대화의 이중과제”(『문화과학』 22호), “변혁과 탈주의 이분법을 넘어서”(『문화과학』 25호) 등 참조.

정 요소를 축으로 설정하는 환원주의적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한 폭발적인 자동 기술화의 확산에 따른 기술적 실업, 구조적 실업의 확대를 치유할 방안은 없다.

그러나 생산의 3요소를 요소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으로 보는 대신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의 전체로 바라볼 경우 생산성 개념은 달라질 수 있고, 생산성 향상-분배적 정의의 관계를 포지티브 섬 게임으로 이끌어 나갈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 향상은 단지 노동력의 재생산이나 생산 수단의 기술적 향상 중 어느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3요소간의 포지티브 피드백 관계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지티브 피드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A) 생산 수단의 자동 기술화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유발하는 새로운 직업과 그것이 퇴출시키는 기존의 직업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력 재생산의 적정조건을 창출해야 하고, 기존의 노동 개념과는 다른 활동(문화적 '활동', 정치적 '행위' 등)을 포함하는 의미 있는 새로운 작업과 행위의 창출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B) 기존의 생산 관계가 유발한 원자재와 환경 훼손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생산/소비 관계의 창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선택의 폭이 나타난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요구와 분배적 정의에 대한 요구는 본래 외재적 관계가 아니라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내재적 교차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내재적 교차 관계를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보면 X(생산성)축은 광의의 생산성 개념인가 협의의 생산성 개념인가에 따라 +/- 축으로, Y 축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가 배제하는가의 방향에 따라 +/- 축으로 나뉘어지면서 4개의 좌표군으로 구별될 수 있다. F(X, Y)의 함수 관계로 보면 1군(+, +), 2군(+, -), 3군(-, -), 4군(-, +)의 4가지 군이 그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3군에 머물러 왔던 바, 급속한 자동 기술화의 성과를 '20 대 80 사회'로 귀결되게 하지 않으려면 생산성 개념을 확대하여 3군에서 1군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IMF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제기된 개혁 논의의 대부분은 3군에서 1군으로의 전환에 관한 것이 아니라 3군과 4군의 문제들 사이의 대립 양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정책이 3군의 문제들 안에서 생산성 향상을 모색한다면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4군의 문제들 안에서 분배적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자에 깔려 있는 공통점은 생산성 향상을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한 채, 생산성 향상인가 분배적 정의인가를 양자 택일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대립으로는 제로섬 또는 마이너스 섬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다른 글에서 이렇게 확대된 생산성 개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실제로 잉여가치의 무한한 축적을 목표로 하는 생산성주의로부터 벗어난 방식으로 생산성 개념이 재정의 된다면 생산성이란 자본, 자원, 필요 노동 시간 등을 최소한 사용하는 대신 생산된 생산물과 활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생산 활동 이외의 나머지 시간을 인간과 자연의 자기 이해와 자기 충족성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자연 역시 단순한 생산의 재료나 도구로 간주되는 대신 오히려 생산 과정의 재생산의 지속 가능 여부를 조건지어 줄 지평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¹⁵⁾. 이와 같은 새로운 생산성 개념은 진보를 단순히 물질적 조건의 확충으로만이 아니라 자기 목적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다양한 행복의 기준, 생태적 균형과의 절합에 따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물질적 부의 축적과 고소득자의 삶의 질 향상에만 관심을 갖는 신자유주의나 평등주의적 분배에만 관심을 갖는 전통적 형태의 사회주의 또는 사회 민주주의와도 다른 형태의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생산성 개념은 추상적인 당위나 논리적 가능성이 아니라, 제3차 산업 혁명이 유발하고 있는 노동의 감소와 자유 시간의 증대, 근대사회가 유발한 대규모의 환경 파괴, 민주주의의 증대에 따른 다양한 삶의 방식들의 권리 주장과 대중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15) 출처, 「탈근대 문화정치와 문화연구」, 문화과학사, 1998, 60쪽

증대라는 복잡한 현실을 절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적인 요청이다. 나는 이런 요청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이행이야말로 20:80 사회로의 이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보며, 이런 이행을 "근대적 노동사회"에서 "탈근대적 문화 사회"로의 이행이라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5. '문화교육', 교육 개혁의 새로운 지도 이념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학교 붕괴에 맞서 학교 재건을 도모하려는 교육 개혁이란 곧 대대적인 사회적 이행에 필요한, '확장된 생산성' 개념에 입각하여 학교 교육의 목적과 이념을 새롭게 세우고, 근대적 노동사회가 필요로 했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탈근대적 문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교육부도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새로운 지식관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기초 교육의 교과 과정과 고등 교육의 학문 편제도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 계발과 학습에서의 자기 주도성 함양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명제적 지식만이 아니라 암묵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식 개념의 확장이 교과 과정과 학문 편제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여전히 협소한 생산성 개념과 근대적 노동사회의 틀을 대전제로 한 것들이며, 여전히 기술 공학적이고 시장주의적인 논리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지적은 정부가 발표한 '지식기반사회'라는 개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¹⁶⁾. 실제로 지식 기반 사회가 열어주는 긍정적 기회를 확대하면서 그 부정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지식 교육을 근대적 노동 사회의 생산성주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할 실제적인 실천, 즉 새로운 지식관과 그런 지식이 힘을 발휘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내용으로 담아낼 교과 과정과 학문 편제의 재구성이 시급하다. 지면의 한계로 여기서는 그렇게 재구성되고 학습될 새로운 학교 교육의 내용적 윤곽만을 개괄해 보겠다.

좁게는 교과 과정의 내용, 넓게는 교과 과정의 편성은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 심리적 자질 등의 발달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단계별 능력에 맞게 사회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지식과 정보를 학습, 축적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교육은 후자의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개인이 잠재적으로 지닌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능력들(faculties)'을 최대한 계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이유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려면, 전자와 후자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탈근대적 방식으로 교과 내용과 능력들의 복잡한 관계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근대성의 본격적 출현을 즈음하여 제시되었던 지식생산의 인식론적 기초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재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칸트는 18세기 말, 여러 상이한 지식영역들이 단순히 연구대상의 영역이나 주제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상이한 마음의 능력들의 특수한 작동방식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대학문의 편성체계를 새롭게 세우는 토대를 제공했다. 그는 인간의 정신능력들이 인식능력, 쾌/불쾌의 감정, 욕구능력이라는 3가지 이질적 능력들로 구분되며, 이는 각기 오성(순수이성), 판단력, 이성(실천이성)이라는 3가지 상위의 인식능력들이 제공하는 3가지 상이한 선천적 원리들(합법칙성, 합목적성, 궁극목적)에 의해 지도되고 운영되며, 자연과 예술, 그리고 자유라는 3가지 이질적 적용대상들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수학이나 자연과학적 탐구의 열쇠는 오성의 작동에서, 미학적 탐구는 판단력(특히 반성적 판단력)의 작동에서, 그리고 도덕과 형

16) 이에 대해서는 「문화과학」 19호(99년 가을호)의 특집 "지식생산의 변동과 교육개혁"에 수록된 강내희, 홍성태의 글을 참조할 것.

이상학은 실천이성의 작동에서 구해질 수 있다. 말하자면 정신적 능력들의 이질적 차이들로부터 학문적 편성의 근거를 도출했던 셈이다.

그런데 막스 베버나 하버마스 같은 이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지식 생산과 교육의 면에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던 것은 이런 방식의 구분에 근거하여 지식 영역간의 분과화/전문화가 이루어진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문화적 근대성'의 큰 특징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문화적 근대성'의 큰 병폐가 이 3가지 능력들 중에서 오성(하버마스가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르는)의 과도한 사용과 지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며, 이런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인식 능력들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3가지 능력들 중에서 나머지 두 능력들이 오성(또는 도구적 이성)으로 상환되어 능력들 간의 관계가 기형화된 이유는 물론 근대 자본주의의 팽창 과정에서 사회가 요구했던 협소한 개념의 생산중심주의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칸트의 철학 자체가 이와 같은 인식론적 환원주의를 제시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칸트의 인식론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1) 하나는 3가지 인식능력들이 서로가 환원 불가능한 고유성과 이질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는 점이며, (2) 다른 하나는 이런 환원 불가능성이 완전히 통약 불가능하게 별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별개일 경우 주체가 내포할 수도 있으므로) 반성적 판단력을 매개로 일정하게 연결(보다 정확히는 '절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근대성/탈근대성에 관한 이론 논쟁에서 '차이의 철학'을 주장하는 리오타르나 들뢰즈 같은 이들이 (1)의 측면을 강조한다면, 하버마스 같은 반-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2)의 측면에 비중을 둔다고 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나는 (1)과 (2)의 두 측면 중 어느 하나를 양자 택일할 수 없도록 상호 전제하는 방식으로 인식 능력들의 관계를 구조화시켜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칸트 철학의 생명력이며, 이런 점에서 칸트 철학은 단지 인식론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학적 존재 방식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특수한 존재론적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¹⁸⁾. 이렇게 능력들간의 불일치와 일치라는 일견 상호 모순적인 관계를 끌어 안고 있다는 점에서 칸트의 철학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양 측면의 동시적 작동이 지닌 생명력은 다원적으로 열리면서도 일정하게는 결합되는 원심적/구심적 운동의 역동적인 계주(relay)의 모양새에서 나온다고 본다.

이런 해석에 입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반성적 판단력(미학과 예술)을 몸통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순수 이성(법칙을 탐구하는 과학)이 그 반대 방향으로서는 실천 이성(자유를 추구하는 도덕)이 서로 양 날개를 퍼는 양상으로 말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반성적 판단력이라는 몸통의 작동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질주하는 두 날개의 작동을 그때그때 일정 간격을 두고 묶어주는 결절점(nodal point)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 근대화 과정은 오성이라는 한쪽 날개가 중심 몸체가 되어 버리고, 이성이라는 다른 한 날개와 반성적 판단력이라는 몸통 자체는 과도하게 주변화되거나 찌그러짐으로써 그로테스크한 방식으로 인간의 잠재적 능력의 일정 영역을 기능 정지시켜온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오늘날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기술 혁신과 시장 논리에 지식 생산을 종속시키려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판적 지식 생산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멀티 미디어적인 방향으로의 문화 지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17) 졸고, "근대화/탈근대화의 이중과제" 참조.

18) "사실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이라는 개념은 야누스적인 면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차이성과 분열의 편에서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성과 통일성의 편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의 철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의 '반성적 판력'에서 허위적 대립성을 넘어선 진정한 조화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그의 '반성적 판단력'은 대립을 위한 대립이나 통일을 위한 통일이 아닌 대립적 통일을 적극적(긍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극적(부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이성Zwischen의 철학'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김석수,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과 현대철학", 『칸트와 미학』, 한국칸트학회 편, 민음사, 1997, 349쪽).

를 파악하려면 이런 요구가 근대 사회에서 형성된 지식과 능력들의 전반적 '배치'(konstellation)의 역사적 성격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중인 새로운 변화가 지식들과 능력들간의 기형적 관계라는 근대적 지식의 성격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또는 단절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지식관의 변화의 핵심 내용이 명제적(propositional) 지식 이외에 암묵적(tacit) 지식이나 과정적(process) 지식을 중시하며, 지식의 수행성(performativity)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식관과 근대적 지식관과의 단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암묵적, 과정적 지식, 지식의 수행성에 대한 강조는 사실상 최근의 특징이 아니다. 이미 근대화의 초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비밀에 싸여 있던 장인적 작업 과정과 경험 속에 내포된 암묵적 지식들을 명제적 지식으로 일반화하는 작업이 바로 도구적 합리성과 오성중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지식 생산 양식의 주된 특징이던 만큼, 오히려 근대적 지식생산은 항상 새롭게 명제화해야 할 암묵적, 과정적 지식을 새로 발견하고자 노력해온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오히려 최근 3차 산업 혁명이 유발하는 새로운 지식 생산 양식의 변화는 '대상 지식'/과정 지식을 강조하는 과정을 거쳐 '지식에 대한 지식'이라는 '메타-지식'의 차원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고¹⁹⁾, 이로부터 인식론의 비약적 발전이 예측된다는 점에 있다고 보고 싶다. 따라서 지식 기반 사회로의 변화가 근대적 지식과 맺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식의 수행성에 초점을 맞춘 지식관이 다가오는 변화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는 것은 여전히 근대적인 오성 중심주의/도구적 합리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오히려 이제 필요한 것은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가 강조했던 바와 같이 3가지 인식 능력들의 불일치-일치의 역동적 관계라는 관점을 되살려 지식-인식 능력들의 탈기형적 배치를 위하여 새롭게 지식 생산과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고, 이런 능력들의 재배치 속에서 '메타-지식'(사이버네틱스)의 성격과 역할을 새롭게 규명해내는 일이라고 본다. 문화적 근대화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칸트로부터 문화적 탈근대화의 새로운 원리를 도출해낸다고 하는 것은 이상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독해는 3가지 능력들간의 관계를 순수 이성 비판의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판단력 비판의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가, 또는 칸트의 철학의 기본 특징을 순수한 인식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식론적 존재론이라고 볼 것인가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어불성설일 수도 정합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나는 『판단력 비판』을 '인식론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재독해하고, 칸트-들뢰즈-사이버네틱스를 재연결시킴으로써 능력들의 불일치-일치의 역동적 계주라는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며, 이로부터 탈근대적 교육 내용의 체계를 구성해 볼 수 있다고 본다²⁰⁾.

이런 발상은 설러가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기초하여 '미적 교육'이 사회 정치적 혁명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나 마르쿠제가 프로이트를 매개로 이런 구상을 변형,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의 낙차를 규명하고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가능해진 '잉여분'을 토대로 '문화혁명'의 가능성을 주장했던 것과 일정하게 연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낭만주의적 제안으로 그친 것과 달리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탈근대적 문화교육'의 플랜은 탈근대적 학문 편성을 위한 '인식론적

19)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협의회 편, 『현대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민속원, 1998)에 수록된 졸고, "21세기 인문학의 발전방향: 테크노/사이버문화와 지식생산/주체화 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 136-137쪽 참조. '지식의 지식'=메타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오늘날 사이버네틱스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 칸트 철학의 특징이 '인식론적 존재론'에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문성학 지음, 『칸트 철학의 인간학적 비밀』,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7) 참조. 한편 여러 능력들의 불일치-일치의 계주라는 구상은 불일치를 강조하면서 칸트에 기대어 칸트로부터의 탈주를 기획한 들뢰즈의 『칸트와 비판철학』의 발상을 다시 칸트적 문제의식 쪽으로 끌어당겨 보는 것을 의미한다. 지면의 한계로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존재론'의 '실시설계도'를 그려내고, '미적 교육'을 모든 교육과정의 중심체로 설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와 사회적 실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구상에 기초하여 기초 교육 과정의 교과 내용 재편의 윤곽을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겠다. 우선 초등학교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양적인 차원에서부터 좁은 의미의 예술(칸트가 순수한 미적 판단이라고 불렀던 바)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 활동(칸트가 취미 판단 일반이라고 불렀던 바)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과정의 코어 프로그램을 차지해야 할 것이며, 과학 기술 교육과 사회 도덕 교육은 양 날개의 위상을 차지하도록 교과편성이 바뀌어야 한다²¹⁾.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로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중심 몸체는 점차 슬림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식 영역과 인식 능력들의 관계를 도구적 합리성-오성 중심으로 기형화된 근대적 배치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3가지 이질적 지식 영역-인식 능력들의 탈근대적인 역동적 재배치를 통해 배제되었던 지식-능력들의 재활성화를 추구하는 교육 이념이 곧 '탈근대적 문화 교육'의 이념이다. 물론 양적인 비중 조절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질적 차원에서 교육 내용의 조절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질적 차원에서는 반성적 판단력, 상상력, 감성적 수용 능력과 오성적 개념화 능력의 관계 등에 대한 칸트적 통찰을 더욱 현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성적 판단력 개념은 퍼스가 가추법(abduction)이라고 부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 개별 사례로부터 가설-추리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법칙을 발견해 가는 과정으로서 과학적 발견에서 예술 창작이나 탐정의 추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의적, 창조적 행위의 골간을 이루는 것이다. 소위 주어진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사고가 아니라 주어진 문제 자체의 전후와 공백을 간파하고 문제의 요소들만이 아니라 요소들의 관계망 속에서 형성되는 문제들(problematics) 자체를 문제삼을 수 있는 사고 방식이 그것으로, 칸트 식으로 말하면 전자는 규정적 판단력의 작동 원리를, 후자는 반성적 판단력의 작동 원리와 메커니즘을 보다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적인 인식론적 진전(특히 기호학과 사이버네틱스)의 관점에서 보면 칸트에게는 인식능력의 '선행성' 개념과 연관된 일련의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칸트는 반성적 판단력/상상력이란 개인마다 타고난 특별한 선행적 인식 능력으로 소위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키워질 수 없는 능력이라고 설정된다(이 때문에 '천재' 개념이 요청되며, 예술적 천재에 대한 근대적 신화가 형성되고, 이런 신화가 아직까지도 예술교육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문맥으로 오면 이런 특수한 능력들의 작동 방식이 퍼스의 가추법적 추리 이론과 바슬라르-깡기엠-알튀세적인 문제들적 사고라는 개념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명되고 또 일반화되면서, 이런 능력들의 훈련 가능성이 새롭게 열리게 된다. 또한 토마스 쿤을 인용하자면 이런 능력들은 선행적 인식 능력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지식 분과를 틀지우는 제도적 관행 및 실험적 장치들과 불가피하게 결합되어 역사적으로 변화하면서 지식 분과에 속한 성원들의 시각과 사고 방식을 한계 짓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으로 보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칼 오토-아펠이 이런 문맥에 기초하여 칸트의 선행적 인식 능력들에 내재된 초월적 면모를 역사적 선행성이라는 개념으로 전환시킨 사례도 반성적 판단력 개념의 역사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성의 열쇠를

21) 실제로 이런 전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한때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 명성을 날렸다가 현재 교육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자크 랑은 2000년 12월 기초 교육 = 예술 교육이라는 등식을 공표하면서 기초 교육 과정의 주요 교과목을 예술 교육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교육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경우도 제7차 교육 과정 개정안에 담긴 수준별/선택적 교과 과정 개편안에는 어느 정도 이런 성격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근본 문제는 이 문제를 지식 영역-능력들의 재배치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식 영역의 중심 축은 그대로 두고 이수 학점 부담을 줄인다는 양적인 조절과 교수 및 학습 방법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동기 유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데에 있다. 가령 게임, 만화 그리기, 역할극, 스피드 퀴즈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개발, 적용하려는 이유는 수준별 학습에서 하위 수준에 머문 학생들에게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보조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고, 인식 지도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 역시 수준별 학습으로 발생할 학생들간의 위화감 형성, 특히 하위 수준 학생들의 소외감, 열등 의식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다.

취고 있는 타고난 자질로서의 반성적 판단력을 100% 교육에 의해 향상시키기는 어렵다고 해도, 문제와 쟁점 중심의 사고 훈련을 통해, 그리고 지식 분과와 학문 편성의 제도적 관행의 변경을 통해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축으로 재문맥화된 반성적 판단력/상상력은 따라서 오늘날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을 키우는 열쇠가 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지식의 지식'과 같은 새로운 메타 지식의 생산 방식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식 생산 양식과 교과 편성 및 능력들의 확장 전망이 열릴 수 있다. 따라서 기초 교육 과정에서 고등 교육 과정에 이르는 전체 교육 과정에서 교육 콘텐츠의 구성과 운용 전반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 이념 형성의 철학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제도화된 '문화 교육'은 오늘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생산 수단의 자동 기술화와 그에 수반되는 도구적 노동의 급격한 감소, 자유 시간의 증대를 도구적 노동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활동(오성과 규정적 판단력 이외에 감성, 상상력, 반성적 판단력, 실천 이성이 주로 작동하는)의 창출에 대한 사회 문화적 필요에 부응할 수 있고, 지식 기반 사회의 지식 생산성 향상의 키를 이루는 창의성 육성에 적극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새로운 '문화 교육'을 통념상의 예술 교육을 중심 축에 놓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통념상의 예술 교육은 사실상 지난 200년간 근대화 과정에서 장르별 전문화를 통해 제도화되면서 사실상으로는 반성적 판단력/상상력이 아니라 규정적 판단력/오성적 도식의 지배하에 굳어져(버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성적 판단력의 학습 불가능이라는 초월적 '천재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광범위하게 제도화된 '제도 예술'은 재료와 매체를 다루는 기술과 장르적 규범을 축으로 움직여 왔고, 특히 우리 사회의 예술 교육과 예술 현상은 이와 같은 기술주의와 규범주의에 의해 완고하게 경직화되어 왔으므로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이라는 예술 고유의 매력을 상실해 버렸고, 그에 따라 문화 발전을 견인하는 기능 역시 스스로 상실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19세기 후반 이래 서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아방가르드 운동은 이런 경직화를 비판하고 저항하는 원동력이었으나 우리 사회는 식민지 시대와 왜곡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식의 비판적 능력과 반성적 판단력을 허용할 수 없는 닫힌 구조를 예술계에도 강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제도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예술 현장의 관행은 반성적 판단력/상상력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질적으로 재평가되고, 해체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시급한 대상인 셈이다.

나아가 '문화교육'은 재구성된 예술만이 아니라, 대중매체문화를 포함한 일상생활에서의 취미형성의 문제를 주요한 쟁점으로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도 다시 칸트가 제기했던 '취미판단'의 문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칸트는 애초에 대상이나 표상과 쾌/불쾌의 감정과의 관계가 욕구능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3 가지 종류로 구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감각적 자극에 의해 쾌락을 주는 '쾌적'(Angenehme), 단지 만족을 주는 것일 뿐인 '미'(Schoene), 그리고 존중되고 시인되는 객관적 가치를 갖게 됨으로써 만족을 주는 '선'(Gute)이 그것이다. 여기서 '쾌적'과 '선'은 욕구능력(의지, 실천이성)과 관계되므로 대상의 현존과 관계되나, '미'는 욕구능력과 무관하므로 대상의 현존과는 무관하게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만 관조적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쾌적이 동물에게도 타당한 것이라면, 미는 오직 인간에게만 타당하며, 선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 일반에게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²²⁾. 그런데 칸트에 대한 일반적 해석에서는 이런 수준들의 '구별'을 플라톤주의적으로 위계화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감각적 '쾌'와 관련된 취미는 동물적인 것으로(하층계급의 것으로) 배제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었다²³⁾. 그러나 본래 칸트가 순수하게 '무관심적인'(disinterested) '미' 그 자체를 찬양하기 위해

22) I.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hrsg.von Karl Vorländer, Verlag von Felix Meiner in Hamburg, 1924, s.46-47. 참조.

23) 칸트 미학에서 엿보이고, 후대에 와서 형식주의적으로 고착된 이런 위계화에 대해 가장 집중적인 공격을 가한 것이

'미'로부터 감각적 쾌락을 분리시킨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미적 형식(the beautiful form)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으로서,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도덕적 선으로의 이행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미'에게는 쾌락과 선으로 양극화되기 쉬운 내적 분열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적극적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칸트의 전 철학 체계 내에서 '미'는 종종 윤리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해온 근대 예술의 자율성 논의와는 달리, 오히려 윤리적인 능력(규범적 윤리가 아니라 칸트가 '자유'라고 부른 새로운 윤리적 이념을 단련하는 능력)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숭고'는 미에서 선으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매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칸트의 문제는 이런 매개를 상승하는 측면에서만 파악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미-숭고-선으로 나아가는 이행과 매개는 역 방향으로도 고찰될 필요가 있다. 이 역방향의 이행이란 곧 거시적 비전으로부터 일상생활의 미시적인 감각으로 하강하는 이행에 다름 아니며, 여기서도 미적 판단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4가지 수준들을 '탈서열화'시키고, 각 수준들간의 역동적인 '계주'를 양방향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미학을 탈코드화하여 그 작동방식을 확장하고 역동화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문화연구의 과제라고 하겠다.

6. 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 교육 시민 운동의 제안

어찌보면 이제까지 거시적 관점에서 개혁에 관한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기껏 제시하는 대안이 제도적인 것이라기보다 교과목 재편성의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커리큘럼 만들기 운동(문화 교육 운동)인가라는 데에 실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교육 운동은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장기적 운동이며, 학교 붕괴에 대한 여러 제도적 대안들이란 미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제도 개선 자체가 새로운 교육 내용까지 창조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오히려 제도적, 절차적 개선에서 진척이 느리더라도 계속해서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그때 그때 불완전한 제도 속에서도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잠재력을 새롭게 진작케 하고 비판 의식과 함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꿈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안내하는 새로운 교육 내용의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그간의 교육 운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교육 내용의 개선에는 힘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본다. 이 때문에 현재 절실한 것은 미래를 끌고 나갈 젊은 세대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다가올 전지구적 위기의 가속화에 대응하고, '생태적' '문화사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려는 역사적 프로젝트에 참여토록 준비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급속하게 진행중인 자동 기술화로 야기되는 구조적 실업의 확대와 노동 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자유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가 점점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현재의 문화 지형은 이런 자유 시간을 상품 소비와 쾌락주의적 오락에 탕진하도록 굴절되어 있고, 소비와 오락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권태와 폭력에 자유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학교에서의 무성의와 권태, 심지어 학교 폭력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수행할 유용한 역할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²⁴⁾ 이와 같은 '교실붕괴'와 '학교붕괴' 현상은 대안적 노력을 위한 광범한 사회적 노력 없이는 사회붕괴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문화 교육의 이념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큰돈을 벌고 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낙오자로 방치되는 방식의 양자 택일로 내몰리기보다는 돈과 권력은 적어도 문화적으로 가치 있

바로 피에르 부르디외의 "판단력의 사회적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24) 닐 포스트먼, 같은 책, 141쪽 참조.

는 일을 하며, 자신의 적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인생의 다양성을 체험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설득하고, 청소년들의 꿈과 에너지에 생명력을 불어넣게 하자는 것이며, 또 그런 활동에 주된 가치가 부여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구성해가지 않는다면 '20 대 80 사회'라는 끔찍한 미래가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초 교육 단계에서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깨닫고 체화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 과정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은 단지 이념적 제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화 교육의 이념을 기초 교육 과정의 각 단계별에 적합한 실제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체화해야 하며, 새로운 교과과정의 내용과 형식을 세부화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교사들을 새롭게 교육시켜야 하며, 새로운 교육 재료와 교육 수단은 물론 새로운 평가 방식²⁵⁾을 만들어야 하며, 이런 방식의 교육 내용의 재편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무엇보다 특히 학부모들의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하고, 동시에 교육부 관료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며, 나아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상당한 교육 재원(가령 누진세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교육세를 징수하는 등)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학력중심사회=직업적 서열화가 강제하고 있는 입시중심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NGO 활동의 창출과 사회적 보상체계의 대대적 수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²⁶⁾.

이런 일들은 다수가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시행 착오를 동반할 것이며, 많은 학자들과 교사/교수들의 의욕적인 연구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원 봉사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커리큘럼 개정을 위한 문화 교육 운동은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 운동'이 될 때에만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기존의 교육 운동 단체들이 최근 '교육개혁시민운동'이라는 명칭하에 연대들을 구성했으나 여기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교과 내용 연구는 전문가의 몫이고 제도 개선은 운동 단체의 몫이라는 이분법으로는 이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물론 양자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문화교육시민운동'이 출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특히 교과 내용 재편은 대학에서의 학문 체계의 재편성 문제와 연결되므로 만만치 않은 작업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절합적' 노력이 불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교육 붕괴와 학교 붕괴에 대해 탄탄하면서도 뚜렷한 전망 없이 교육 현장에서 시달리는 고통, 실패의 확률이 더 높은 '교육 이민'을 감행해야 하는 모험에 비하면 해 볼만한 노력이 아닐까? 나아가 폭력적 억압과 생존권 박탈의 위기에 돌고 돌고 지속적 투쟁을 감행해온 노동 운동에 비해 이런 노력

25) 7차 교육 과정 개정안의 시행 가능성에 대한 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현재와 같은 내신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한, 중등학교에서 수준별 교육 과정에 따른 평가가 자리잡을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연구 학교 사례, 시·도 지침, 교육부에서 발간된 연수 자료 등을 살펴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공정한 내신 성적 산출이라는 대 명제 앞에, 수준별 교육에 따른 수준별 평가란 무색할 뿐이었다. 수준별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된 평가 방안들은 이상적(理想的)인 조건(즉, 내신 성적 산출의 제약이 없는 조건) 하에서 수준별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내신 제도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된 것(예: 상, 중, 하 문제를 출제를 하고 가중치를 달리하기; 상, 중, 하 문제를 비율을 달리하여 출제하기 등)도, 궁색할 뿐더러 여전히 공정성 시비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입시 제도와 조율 문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10년 동안에 적용되는 단계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에서보다, 고등학교 2-3학년으로 실시되는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 과정 적용 과정에서 더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개별 학생의 성취 및 진보 수준을 보여주는 수준별 평가가 제대로 실시되려면, 내신 제도와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방식이 현재와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이 나와야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이화진, 「제7차 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 지원 연구- 수준별 교육 과정 운영 및 평가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부 교육정책연구, 2000년 12월)

26) 줄고, "진보적 교육개혁의 과제와 전망" (『문화과학』 19호), 29-30쪽. 소득의 수준에서는 시장/정부/NGO 영역 순으로 서열화되지만, 사회적 명예와 자기개발, 자유시간 활용도 등의 면에서는 반대로 서열화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보상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보상체계가 수립되어가는 정도에 비례하여 입시중심교육=학력사회의 병폐들이 약화될 수 있다.

이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인가? 노동자 대중 전체보다도 더 많은 학부모의 관심과 이해, 전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젊은 세대의 꿈과 희망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촉발할 운동이 있을까?

아마도 '문화교육시민운동'을 출범시키고,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도구적 이성에 기반을 둔 기능적 지식과 실용적 정보의 학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실천 이성과 반성적 판단력, 비판적 이성과 상상력, 지각 및 신체적 감각과 감수성, 언어적 기호와 비언어적 기호들을 독해하고,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능력 등을 키우는 데에 적합한 커리큘럼과 교육 방법을 입체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일일 것이며, 여기서 개발한 문화 교육을 통해 문화 사회로 이행해 가는 전망을 보다 구체화하고 개념을 다듬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일일 것이다. 이런 작업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며 따라서 지금처럼 교육 행정가나 교육 공학자, 또는 분과 학문의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철학적 통찰력을 갖춘 당대의 학자와 지식인들도 발벗고 나서 떠맡아야 할 일이다. 실제로 "공자와 플라톤은 오늘날로 치면 '교과 과정 전문가'이다. 키케로, 퀸틸리아누스, 에라스무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 교육에 관해 저술했고, 위대한 영국 시인 존 밀턴은 교육 개혁을 일컬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설계 작업 중의 하나'라고 찬미하였다. 현대에는 윌리엄 제임스나 러셀, 화이트헤드, 존 듀이와 같은 위대한 지성들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비트겐슈타인이나 포퍼는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²⁷⁾ 이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설계를 위해 이제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

27) 닐 포스트먼, 같은 책, 186-7쪽.

< 토론문 > '지식기반사회'와 교육운동과 '문화예술교육'

이 순 철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1. 들어가며

발제자의 문제의식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나올 '파생문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식기반사회'는 사실 현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입니다. 이런 탓에 교육운동의 관점에서 '지식기반사회'는 일종의 넘어야 할 이데올로기적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체제 재편'의 정당화 근거가 '지식기반사회'이기 때문입니다.

1998년부터 현 정부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이를 위한 '인간상'으로 '신지식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문명사적 대세'가 형성된 것처럼 '지식기반사회론'은 엄청난 위력을 떨쳤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현 정부 교육개혁의 기초가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임기말인 2002년, 이제 처음과 같은 '호들갑'은 많이 사라져 버리고, 지식기반사회론 또한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벤처 캐피탈 중심의 '아이씨티 산업' 거품이 빠지는 것과 지식기반사회론의 '퇴색'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듯 합니다. '지식기반사회' 담론의 비판적 극복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발제자는 이를 위한 아주 의미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지식기반사회' 담론과 '실용주의'의 과잉

지식기반사회론의 '퇴색'은 지난해 9.11테러 전후의 미국경제 상황, 또 2000년 하반기부터의 한국경제 상황과 더불어 진행되었습니다. 9.11테러 이전 이미 미국의 '신경제'로 표상되는 아이씨티 산업이 '붕괴' 중이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실물'에 해당하는 아이씨티 산업이 '금융거품' 일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지식기반사회'는 미국 클린턴 8년 집권기간의 이데올로기적 산물로서, 그 의미는 매우 유동적이었습니다. 한편 자본일반의 범주에서 '벤처캐피탈'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지극히 간단해 집니다. 자본은 과잉 투자되면 '정리'시기를 맞게됩니다. 결국 아이씨티 산업과 벤처캐피탈의 퇴조는 '자본'일반이 걷는 필연적 경로를 걷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현 정부의 '지식기반사회' 담론이 그야말로 '시대구분'의 기준처럼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 '공교육의 모든 문제'원인을 지식기반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탓으로 돌려왔습니다. 이를테면 '학교붕괴'의 원인도 그 때문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교육체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독 일본과 한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거의 의도적으로 '범세계적인 현상'으로 보편화합니다. 이는 한국 교육의 특수한 문제를 없는 것처럼 가려버리는 정치적 효과를 내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대책'이 쏟아져나오게 되는데, 현재 거의 경제부처에게 '주도권'이 넘어가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그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 이름을 바꾼 근거도 '지식기반사회와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로 설명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핵심쟁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집권'의 경제와 산업적 기반으로 '아이씨티 산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육성한 사실은 '논외'로 치더라도 말입니다. 미국의 소위 '신경제'가 진정 '시대구분'을 할 정도로 '혁신적'이었는데, 그만큼 엄청난 실물경제의 '생산력 향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묻는 순간 '회

의적'인 관점이 나올 수밖에요.

'지식기반사회론'의 '퇴색'은 때문에 예정된 행로였던 것입니다. 9.11테러 이전 미국이 '선거 후유증'속에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이 실패하고, 군산복합체를 대표하는 공화당 정권으로 바뀐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금융거품으로 육성해 놓은 아이씨티와 이를 떠받치는 주식시장-나스닥이니 코스닥이니 하는 것들-의 붕괴는 한국과 미국이 비슷합니다. 이 과정속에서 '지식기반사회'의 과도한 장미빛 덧칠이 벗겨지면서 '재벌체제'의 부활과 강화조차 예정된 듯 보입니다.

교육개혁 정책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낡은 '국가주의적 획일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점은 '민주화'의 추세속에 일정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을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의 무차별 적용으로 과도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압도적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소위 '경쟁'과 '효율'에 따라 전사회를 재편하며 특히 공교육은 국가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공격적 시장원리 적용'의 대상으로 쉽사리 전략한바 있습니다.

3. 돈벌이 중심 '실용주의'와 교육에서의 '가치지향'의 완전한 몰락

문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시장화' 전략이 동시에 '선진국형'의 '보편교육'으로서의 공교육에 대한 벤치마킹과 병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영국이 수십년 간 '교육복지'로서의 공교육 체계를 마련해 놓았다가, 이를 '신자유주의 기조'에 의해 전폭적으로 후퇴시켰는데, 한국은 다름 아닌 '교육복지'를 막 실현해야 할 '시점'에서 '영국형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양자사이에 모순적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곳곳에서 '파열'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를테면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하며 중학교와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하는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교육정책과 정확히 모순적입니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특히 교육부 중심으로 '평준화를 유지하되 보완' 한다는 등의 어정쩡하고 '동요'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호하게 '사유화'와 '시장만능' 원리의 적용을 요구하는 경제부처와 갈등을 빚을 수 밖에요. 7.20조치는 이러한 현 정부의 '어정쩡함'에서 파생된 산물입니다. 이는 또한 교육재정 '감축'기조로 인한 기본교육여건의 '한계'적 상황을 더 이상 버려둘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내려진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기조의 교육정책이 파열을 내며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공교육 인프라'의 중심에 '컴퓨터 보급'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21일 전국의 학교를 잇는 컴퓨터 망이 완료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야심작'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제 '지식기반사회'가 어떤 것이건 간에, 학교교육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게임'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의 10대는 예전과 전혀 다른 '세대'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그 '수단'이 컴퓨터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듯 현 정부가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한 교육개혁 중 유일하게 '잔존'하고 있는 것은 '교육 정보화' 사업 정도일 것입니다. 나머지 '가치'들은 과도한 '실용주의'속에 폐기처분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공계' 기피현상은 '규제완화'를 왜곡되게 추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학부모-학생을 교육 소비자로 규정하는 관점 같은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교과목과 학교 선택권을 준다'는 따위의 그릇된 담론이 유포되었는데, 이는 한국적 상황에서 '돈벌이'교과와 '입시경쟁' 교과로 '교육'의 의미를 완전히 축소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나 '과학고' 학생의 40% 이상이 몽땅 '의대'를 지망하는 '한심한(!)' 현실이 현재 한국상황입니다. 이렇듯 '소비자 주권주의'에 입각하여 '돈많은 학부모'의 요구는 글자 그대로 '추수'하면서도, 특히 교원에 대한 '통제'의 고삐는 결

코 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통제의 강화'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정책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지식기반사회 담론과 학교붕괴

발제자는 시장원리의 적용에 의해 '공교육'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공교육은 '시장원리'의 적용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현재 공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지식기반사회'담론의 두터운 '포장지'로 감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내용이나 심지어 교육이 담아야 할 '시대정신'등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유재산과 '시장'만능주의의 경제논리가 '교육 담론'을 점령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은 그 본질상 '가치지향'활동이며, '목적의식적' 활동이며, 인간의 '본능'을 '지양'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세계적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은 이를 완전히 넘어서서 '도구적 이성'을 키우는 '수단'으로 전략해버렸습니다. 그 '도구적 이성'은 오로지 남들보다 잘 사는 것, 더 잘사는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의 한국적 변형태는 '학벌'을 둘러싼 무한질주입니다. 한국에서는 공교육 확대의 '1차 수혜'자인 현 학벌주의적 한국 지배세력이 '신자유주의'에 합의된 '자유주의'조차 무너뜨린 채, 학벌을 향한 질주의 2세대 확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서울시 교육청에 길게 늘어선 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이 이렇듯 오로지 '남을 이기고 더 잘살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수준낮은 본능'에 영합해 들어갈 때 어떤 결과를 빚는가 생생히 드러납니다. 명문 일류대학이 '강의' 품질을 높이는 것 보다 '명문학벌'에 기대 우수학생을 입도선매하고 '학벌의 확대 재생산'을 돈과 연관짓는 '기부금 입학제'와 같은 발상입니다. 고등학교 '등급화'를 아예 공식화하자는 따위의 발상이지요. 한국교육에서 단 한번도 '평등'을 달성해 본적이 없음에도, 마치 과거에 엄청난 '평등주의'교육의 구태에 멈추어서 있었던 것처럼 '군사독재교육'의 선구자 죽벌언론이 왜곡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평준화 해체나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확대 등 '특별한 고교(-->귀족학교)'를 만드는 한국 중상류층의 지나친 '욕망'이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시대정신이나 '삶의 중심'이 없이 떠돌고 있으며, 오직 생존하고 더욱 잘 생존하는 맹목성만이 현재 한국의 '학벌을 둘러싼 질주'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발제자의 문제제기는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매우 신선합니다. 이때의 '핵심'은 정부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사했던 '지식기반사회' 담론에 있다고 봅니다. 단,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발제자는 컴퓨터로 인한 생산의 자동화와 생산성의 향상에 주목합니다. 생산의 자동화는 발제자가 주장하듯 엄청난 실업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업이나 '비정규 노동'의 확대 추세는 반드시 '자동화'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곧, 자본의 '목적의식적 공세'에 의한 측면도 바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학교붕괴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반영'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회를 변화시켜 본다는 생각 자체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사회적 모순의 극대화속에 학교교육은 그것을 반영하여 소위 '붕괴'적 상황으로 갔다는 것인데, 특히 한국교육의 경우 서구와 달리 '군사독재'를 겪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를 학교가 따르지 못해서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교육부나 정부쪽의 시각은 '한국적 특수성'을 포착하지 않는 한, '교사'들에게 '시대착오'의 책임을 전가할 뿐인 하나마나한 진단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며, 심지어 인터넷이 아예 기존의 오프라인학교 자체를 없앨 것이라는 '극단적' 발상을 한 사람들도 관변에 여럿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학교는 불과 3년여만에 세계수준의 컴퓨터 통신망을 구비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하드웨어'를 갖춘 셈이지요. 하지만 학교붕괴 현상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나타

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학교교육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해 '컴퓨터' 설비를 늘리고 '컴퓨터'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학교붕괴' 현상을 극복할 수 없음이 드러난 셈이지요. 물론, 서유럽 여러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금지하고, 발제자가 주장하듯 오히려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식기반사회'와 반대방향으로 갔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학교붕괴'는 없습니다. 저는 발제자의 '예술교육 강화' 입장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특히 취학 전 어린이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들의 교육은 발제자가 주장하듯 '예술교육'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측면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참교육실천'운동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전교조는 올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참교육실천강령'중 '교육적 가치'의 지향을 강조하면서 특히 '녹색교육'의 지향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향이 교사들의 일상적 교육실천의 '기본바탕'이며 '시대정신'으로까지 승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발제자의 지향도 이를 향해 있다고 봅니다.

5. 나가며

그러나 한국교육은 현재 완전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특성화, 다양화' 교육의 구현에 실패했습니다. 재정을 감축하면서 '성과'를 낼려고 했으니 당연한 노릇입니다. 문제는 '돈' 안들이는 개혁조치 파탄났다는 것인데요. 며칠 전 발표된 단위학교 보충수업 완전 허용이 그것입니다.

사실, '특성화, 다양화'가 함축하고 있는 사람 능력의 '수평적 민주주의' 실현라는 정신은 이미 지난해 '어려운 수능'으로 파탄 난바 있습니다. 2000년의 쉬운 수능은 한국사회의 지연, 학연, 혈연으로 뭉텅이진 기득권 세력에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수구 기득권 세력의 '특권'은 '명문고 - 일류대 학벌'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쉬운 수능은 '명문고 - 일류대 학벌'의 가치를 희소화하기게 특권의 위협을 느낀 기득권 세력이 '변별력'에 시비를 걸며 어려운 수능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어려운 수능으로 현 정부의 '특성화, 다양화'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돈안드는 교육개혁'은 끝이 난 것입니다. 강남 '교육특구현상'이 2002년 들어 더욱 강화되고, 이는 부차적이기는 하나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재차 등장했습니다. 적어도 '쉬운 수능' 정책이 몇 년 지속되었으면, 강남 교육특구 현상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수능'이 모든 것을 거꾸로 되돌려 놓았고, 현 정부의 '특성화, 다양화' 정신의 몰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극단적 결과중의 하나는 '조기교육' 열풍입니다. 조기교육이 '사교육'과 결합하여, 이제 공교육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상류층의 '수단'으로서 과도한 교육욕구가 '폭발'해버린 셈입니다. 미국인에게는 '미친' 짓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인인 제가 볼 때에도 그러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자녀를 키운 체험을 바탕으로 '욕심'에 바탕한 조기교육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학벌로의 질주'는 멈출 줄 모르는 조기교육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발제자의 문제제기는 '교육내용'을 쟁점화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의 적절하며 정곡을 찌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연대운동'으로 성립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워낙 다급한 현안이 차고 넘쳐흐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욱 다급한 것은 '과도한 조기교육 열풍'을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발제자가 주장하는 디지털교육과 결합한 '예술교육'은 이러한 잘못된 조기교육열풍을 진정시킬 수 있는 새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7차 교육과정은 시작하기 전부터 '여건미비'로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핵심적 문제는 학생을 '소비자'로 규정하고, 교과목을 '상품'으로 설정하여, 이른바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치제에 속하는 '예체능' 교과목을 '기피'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현재 중학교는 주 2회의 음악, 미술, 체육시간이 주1회로 줄어들고, 상급학년으로 가면 더욱 시간수가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선택권'이 함축한 바입니다.

다. '수준'은 오로지 경제적 능력에 의해, 선택은 오로지 '경제적 유효성'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7차교육과정이 입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근본 철학이 '경제주의'에 입각해 있기에, 7차교육과정은 반교육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단 경쟁과 수월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탓에, 지나친 조기교육 열풍을 부추기고 있을 뿐입니다.

조기교육이 오히려 아이들의 고른 능력발달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취학전에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학년 입학하면 조금씩 글자를 배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렇듯 취학적 조기 글자교육이 발제자가 말하는 '상상력'과 감수성을 오히려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교육학적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열성적 요구'에 의해 입학과 동시에 '받아쓰기'를 행하는 방향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왜 취학 전 어린이에게 '글자'를 가르쳐서는 안되는가, 감수성을 키워주는 '예술교육'이 오히려 아이들을 재능을 꽃피울 수 있게 하는가 등등에 대한 '사실그대로'이며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근거제시'와 설득이 범사회적으로 벌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교육 구매력이 없는 계층조차,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충수업'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요구하고, 그것으로 단지 '위안'을 삼을 뿐이니 지나치다 못해 자라나는 차세대를 정신적 파탄으로 이끌 수도 있는 과도한 조기교육과 영재교육, 수월성 교육의 '학벌을 향한 맹목적 질주'를 중단시키는 것이 선결문제라 봅니다.

**

언론 개혁대상인가, 활용대상인가

기획의도 | 현재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언론'은 뜨거운 감자다. 시민단체들의 경우 언론은 개혁대상이라기보다는 활용대상으로 보려는 시각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언론개혁의 과정에서 메이저신문들은 시민단체와 보수진영 사이에 일대 전선을 긋는 듯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현재 시민단체와 보수신문간에는 팽팽한 긴장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올 초부터 중앙일보의 논조변화로 보수신문 내 카르텔이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단체 내에서 단 한번도 언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론운동단체들의 활동에 부분적으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는 있지만 언론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점에 있어 일부 민중단체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언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내의 입장이 완전히 통일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일부 불편한 관계는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언론활용론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과연 언론활용이라는 말 자체는 가능한 것인가. 언론이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민단체가 언론을 활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수한 밀월관계'인가.

쟁점토론의 작은 목적중의 하나는 그동안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간에 불편했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 사회 : 김서중(민교협 언론대책특별위원장, 성공회대 신문방송)
- 발 제 : 최민희(민연련 사무총장)
- 토 론 : 여성연합, 여성민우회, 환경연합 등.

과거청산과 반인도적 국가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

기획의도 | 현재 진행중인 '과거청산' 문제와 '공소시효 배제운동'에 대하여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사회포럼 2002에 참석한 여러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 기본적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한 '공소시효 배제운동'의 입법전략에서 국제인권조약가입/사안별특별법제정/형사소송법 제정 등의 방안에서 가장 유효한 입법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여, 이후 운동단위에서 주력하여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입법전략에 대한 공통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사회단체들이 '공소시효 배제운동'과 '과거청산운동'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토론을 만든다.

- 발 제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 한택근(민변 국제연대위원장, 변호사)
- 토 론 :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 유봉인(익문사 진상규명위 조사관), 이재명(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 발제문 >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한택근 (민변 국제연대위원장,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고문살해 및 은폐사건 (1973)

1973. 중앙정보부는 “간첩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투신자살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8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교수의 사인이 고문치사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을 잃은 최교수를 건물에서 밀어 뜨렸다는 당시 요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당시 고위 책임자 이하 수사관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삼청교육대 사건(1980)

1980. 계엄하의 신군부가 4만여명의 시민들을 불법 체포, 구금하여 강도 높은 순화교육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만 400여명에 달하는 등 교육기간 동안 강제노역과 구타, 고문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작년 12월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하 사건 지휘 책임자와 폭행살인 가담자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아직 기소여부에 대한 결정조차 통지하지 않고 있다.

이윤성 사망사건 (1983)

1983. 5. 국군보안사는 “군복무중인 성군관대 이윤성씨가 월북기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 자책감을 못이겨 4월 30일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씨가 보안사의 운동권 출신 군인들에 대한 특별정훈교육(일명 녹화사업)과정에서 사망했으며 가혹행위도 당했다.”고 군 발표를 뒤집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군부 고위층에서 이씨의 죽음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이다.

박영두 폭행치사 및 은폐사건 (1984)

폭력전과의 ‘불량배혐의자’로 1980. 계엄군에 연행된 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박영두씨는 군인들의 폭행에 항의하다가 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 청송교도소 복역 중에도 박씨는 재소자 처우 개선을 계속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1984. 10. 13. 숨진 사실이 작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에 의해 밝혀졌다. 박씨의 죽음은 의문사 진상규명위를 통해 민주화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타살 1호로 인정받았지만 공소시효가 10년이 지남에 따라 위원회가 고발을 못하고, 당시 폭행 가담 교도관 4명과 보안과장, 교도소장의 이름만이 공표됐다. 이들 중 일부는 아직도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에서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

수지김 간첩조작, 은폐사건 (1987)

수지김(본명:김옥분)씨는 1987. 홍콩에서 당시 남편 윤태식씨에 의해 살해됐다. 그러나 윤씨와 안기부는 수지김의 죽음을 간첩사건으로 조작, 당시 공안정국에 이용했다. 고인과 유족들이 간첩과 간첩가족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인고의 나날을 보내는 동안 윤씨는 안기부의 비호를 받아 벤처사업가로 성공했다. 작년 검찰의 재수사로 경찰에 내사중단을 요청한 국정원 간부와 경찰청장이 직권남용과 범인도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작 당시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할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 이하 안기부 간부들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도피,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근안 고문사건

얼굴 없는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씨가 2000. 자수한 후,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7년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가 고문을 자행한 79년 남민전 사건과 80년 미스 유니버스대회 폭파음모사건, 86년 민청련 김근태 의장에 대한 고문 등은 시효 만료로 공소가 제기되지 못했다.

이상은 2002. 3. 8.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열거한 사례들로서, 형사소송법 규정만을 놓고 보면 위 범죄행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과거 군사독재정권(박정희 유신정권부터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독재정권)하의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조직적으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해악을 가하였거나, 이후 이 같은 가해행위 내지 기타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조작 또는 은폐한 범죄행위로서 적어도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막을 내릴 당시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그 은폐, 조작된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는 위 범죄행위를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범죄들이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조직적으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해악을 가하였거나, 이후 이 같은 가해행위 내지 기타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조작 또는 은폐한 범죄행위를 반인도적 국가범죄라 정의하고,1) 이들 범죄의 전모가 밝혀진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연합군은 1946년 뉘른베르크 헌장을 제정했는데 동헌장 제6조 제3항은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민간인에 대하여 범해진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추방 및 비인도적 행위, 그리고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 있는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를 반인도적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나치전범에 대한 처리가 끝나지 못했음에도 독일법상 이들 범죄에 대한 시효의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국제적인 대응을 가져 왔는데, 1968. 유엔총회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1) ‘반인도적 국가범죄’는 후술하는 것처럼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와는 일치하지 않는 개념이고, 이에 조국교수는 이러한 범죄를 ‘반인권적국가범죄’라 하고 있으나, 이미 반인도적 국가범죄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반인도적 국가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조국, 반인권적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치.배제, 법률신문, 2002. 2. 25. 참조

동 협약 제1조는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시기와 상관없이 공소시효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전쟁범죄와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 현장에서 규정되고 두 차례의 유엔결의에서 확인된 전시 또는 평시를 불문하고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 1948년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²⁾ 등을 들고 있다. 나아가 동 협약 제2조는 “제1조에 언급된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이 협약 규정은 범행의 완성단계와 관계없이 정범 또는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그러한 범죄행위를 하도록 타인을 직접 교사하였거나, 그러한 범행을 공모한 국가기관의 대표와 사인 그리고 이들의 행위를 묵인한 국가기관의 대표에게 적용된다.” 규정하고 있다.

이후 반인도적 범죄에 관해서는 1993.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 및 1994. 르완다 전범재판소 규정에서 그 개념정의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1998. 로마회의가 채택한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로마규정”에서 집대성되었다.

우선 동규정 제5조는 관할 범죄로 ‘집단학살,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로 규정하고, 제7조는 “이 법에서 말하는 반인도적 범죄는 민간인에 대하여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으로써 자행된 다음 열거된 행위를 말한다. (a) 살인(murder); (b) 말살(extermination); (c) 노예화(enslavement); (d) 강제이주(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e) 국제법의 기본적 원칙에 위반되는 구금이나 심각한 신체의 자유박탈(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in violation of 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f)고문(torture); (g)강간, 성노예화, 강제된 매춘 및 임신, 단종, 혹은 기타 이와 비견되는 성적 폭력(r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forced pregnancy, enforced sterilization, of any form of sexual violence of comparable gravity); (h)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혹은 성차별에 입각한 어느 특정 그룹에 대한 박해(persecution against any identifiable group or cloectivity on political, racial, national, ethnic, cultural, religious, gender...); (i) 강제된 납치행위(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j)아파트헤이드; (k) 기타 의도적으로 신체에 심각한 고통을 주기 위해 자행되는 비인도적 행위(other inhumane acts of a similar character intentionally causing great suffering.... to body...) 라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동규정 제29조는 위 범죄들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완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 볼 때 우리는 위에서 사례로 든 범죄들 중 살인, 폭행치사, 고문 등의 범죄가 국제법상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함은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위 범죄행위들은 군사독재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내지 교정기관을 통해 조직적으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³⁾ 한편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범죄행위 내지 기타 중대한 범죄행위를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조작, 은폐한 행위까지 국제법상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하였고, 그럼에도 범죄사실의 조직적인 은폐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은폐된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공소시효를 배제 내지 정지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과

2) 이 협약은 1948. 12. 9. 채택되어 1951. 1. 12.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1951. 12. 12. 가입하였다.
3) 고문범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함에 대하여 자세히 논한 바 있다. 박찬운, 반인도적 범죄의 국내적 수용, 14,15,쪽, 국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모임주최의 세미나 자료(1999. 11. 24.)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위 국제법상의 규정들을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 논란이 있다. 그러나 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개념정의 및 이들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을 확인한 규정이다.⁴⁾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관습법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관습법상의 공소시효제도는 국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도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직접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⁵⁾ 특히 이처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관습법을 우리 형사절차에 적용하는 것은 후술하는 것과 같은 소급입법의 논란을 막을 수 있다.

3. 국제조약 가입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반인도적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으로서 우리 형사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해서는 약간의 이론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차제에 우리 정부가 지체 없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 과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로마규정”⁶⁾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4. 특별법의 제정

전술한 것처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관습법이 그대로 우리 형사절차에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논란 및 서두에서 열거한 사례들이 모두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느냐의 논란이 있는 바, 공소시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입법이라 하겠다.

가. 적용범지

공소시효를 배제 내지 정지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는 범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박정희 유신정권부터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독재정권)하의 국가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조직적으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해악을 가하였고, 이후 이 같은 가해행위를 조직적으로 조작 또는 은폐한 반인도적 국가범죄행위이다. 나아가 국가기관에 의하지 않은 사인에 의해 저지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이를 조직적으로 조작, 은폐한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조작, 은폐한 범행까지 포함시키는 이유는 국가기관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은폐함에 따라 사실상 범죄자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4) 국제관습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시현,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효문제 및 박찬운, 반인도적 범죄의 국내적 수용, 각 국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모임주최의 세미나 자료(1999. 11. 24.)
5) 이근안에 대한 항고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통권 제34호 (2000. 1/2) 113쪽
6) 참고로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로마규정은 60개국 가입하면 발효하는데 현재 55개국이 가입하였음

나. 공소시효의 배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 방법 중 한 가지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전술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로마규정”의 규정의 방식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5. 12. 21.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형법상의 내란, 외환 균형법상의 반란 이적의 죄) 및 형법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방지와 처벌에 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완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각컨대 적어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살인, 고문 등을 자행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 및 국제조약의 예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입법을 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 공소시효의 정지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한가지의 입법 방법은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의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시효기간은 범죄행위에 따라 최단 1년부터 최장 15년이고(동법 제249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되(동법 제252조), 일정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⁷⁾ 이와 같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유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5. 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⁸⁾ 제2조 1항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조 2항은 ‘국가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993년 2월 23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인정하였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공소시효에 관하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효는 법률상 소추가 개시될 수 없거나 속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지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독일 구형법 69조, 현행형법 78조의 b) 이는 소추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일반원칙을 명문화 한 것이다. 한편 2차 대전이 끝난 후 나치범죄의 처벌을 위하여 헛센주에서 제정한 나치범죄처벌법은 나치치배기간 동안에 정치적, 인종차별적, 반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처벌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는 1933. 1. 30.부터 1945. 6. 15.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나치정권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소추가 불가능하였던 기간 동안에는 위 법률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서 헌법의 제 규정에

7) 형사소송법 제253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3항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 것은 사실상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공소시효의 본질을 명문화한 좋은 예라 하겠다.
8) 1993. 2.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전두환, 노태우 군사쿠데타 관련자들에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여 각계로부터 이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1979. 12. 12. 발생한 군사반란사건에 대하여 1994. 10. 29.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후 헌법재판소마저 1995. 1. 20. 위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다.(1995. 1.20. 94헌마 246) 한편 검찰은 1980. 5. 18. 내란사건에 대해서도 1995. 7. 18.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거로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전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전, 노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민적 운동이 일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5.18.특별법 제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반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하였다. 이후 독일에서는 1964. 4. 13. 공소시효계산법을 제정하여 1945. 5.8.부터 1949. 12.31.까지의 기간을 시효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69. 2. 26.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동독이 무너진 후 1944. 3. 구동독공산당 정권 하에서 범하여지고 구동독의 국가 또는 당 지도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따라 정치적 이유 또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질서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처벌되지 아니한 행위의 소추에 있어서는 1949. 10. 11.부터 1990. 10. 3.까지의 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독일에서는 나치체제나 통일 전 동독의 공산정권 하에서 일어난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불법적 사례들을 청산하기 위한 여러 입법들이 행하여졌으며,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라. 소급입법의 문제

반인도적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내지 정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나아가 제정 이후에도) 이것이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규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바 있다. 즉, 5.18 특별법이 제정된 후 12. 12., 5. 18. 가담자들은 위 특별법 제2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동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동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이나 그 제도에 관한 실정법의 해석에 의하여 당연히 도출되는 사유를 확인하여 공소시효 정지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확인적 법률)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사후에 새로운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를 규정한 이른바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형성적 법률)인지가 문제로 되었는데, 4인의 재판관⁹⁾은 소급효를 가진 법률인가에 대해서 4인의 재판관은 이에 대한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라 하였고, 3인의 재판관¹⁰⁾은 법 및 법집행의 왜곡에 따르는 소추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일정 범위의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입법으로 소급입법이 아니라 하였고, 다른 2인의 재판관¹¹⁾은 공소시효는 법률로써 명문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정지되는 것이므로 이는 소급적 효력을 가진 형성적 법률이라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특별법이 처벌하려는 대상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특별법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부진정 소급입법)이라면 합헌이라는데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나, 법원이 특별법 소정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면(진정소급입법) 이 조항이 위헌이나 하는 문제¹²⁾에 대하여 4인의 재판관¹³⁾은 합헌이라고 하였

9) 재판관 김용준,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10) 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11) 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12) 이러한 논의가 있었던 이유는 1995. 12. 18.에서야 5.18.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1979/ 12/ 12/에 개시된 군사반란사건과 1980. 5. 18. 에 개시된 내란사건의 종료시점을 법원이 언제라고 판단하는가에 따라 1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제정된 진정소급효를 지닌 입법일 수도 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정된 부진정 소급효를 지닌 입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별법이 제정된 후 12.12.군사반란사건의 기소는 1996. 2. 2. 28.에, 5.18.내란사건의 기소는 1996. 1. 23.과 1996. 2. 7.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을 그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하였

고,14) 5인의 재판관15)은 위헌이라 하였으나, 위헌결정을 하기 위한 정족수 6인 이상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합헌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헌법재판소 1996.2.16. 결정 96헌가2, 96헌바7.13(병합))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소시효란 본래 소추가능기간을 의미하므로 정상적인 소추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소시효는 소추기관이 유효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입법이 가능하며 그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점과,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입법은 물론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입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범죄들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범죄 내지는 이를 조직적으로 조작 은폐한 범죄로서 우리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반인도적 범죄이며, 군사독재 정권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물론 이들 범죄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기까지는 공소제기가 전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들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시키는 입법(진정소급입법 포함)이 가능하다 하겠다.

5. 맺음말

이 땅에 30년 넘게 계속되던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비록 전두환, 노태우 등을 군사반란 및 내란죄로 처벌하기는 하였지만,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었던 대부분의 반인도적 범죄들은 그 동안 철저하게 조작, 은폐되어 왔던 관계로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혀 이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조작, 은폐되어 왔던 사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내지 정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공소시효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에의 가입을 성사시킴으로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자들을 마지막 한 명까지 추적하여 처벌하여 진정한 과거청산 및 역사바로세우기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

13) 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14) 합헌의 논거는 ①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② 이 사건 반관행위 및 내관행위자들은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민주주의가 장기간 후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으며, 전국민의 자유가 장기간 억압되는 등 국민에게 끼친 고통과 해악이 너무도 심대하여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은 단순한 법률적 차원의 이익이고, 헌법상 보장된 법익에 속하지 않는다. ③ 위 범죄행위자들이 국가의 소추기관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됨으로써 실현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범죄행위자들의 이 사건 범죄들에 대한 불처벌로 남는 상태라는 불평등을 제거하고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 법률조항들의 목적이 있다. 등이다.

15) 재판관 김용준, 김문희, 황도연, 고중석, 신창언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

기획의도 | 작년 한해 건강보험재정적자문제가 보건의료부문의 화두가 되면서 재정적자의 원인이 의약분업때문인가 아니면 수가인상 때문인가의 논쟁이 지속되었다. 이 논쟁은 적절한 수가,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전문가집단의 위상을 둘러싼 유의미한 논의를 확산시킨 측면도 없지 않으나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논의를 실증시켜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와 추진력을 상당부분 상실케 한 측면이 존재한다. 현재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의보통합이 기되고 보험혜택이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의료개혁의 후퇴하면서 구체적인 개혁과제의 선정과 추진력의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 토론은 보건의료부문개혁속에서 건강보험개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루어진 의료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앞으로 의료개혁의 과제를 어디서부터 다시시작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 주관단체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발 제 : 건강보험의 위기 원인과 그 대안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
- 토 론 : 김용익(서울의대 교수, 건강연대 정책위원), 김미애(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 최재기(사회보험노조 부위원장), 송미옥(건약 정책국장)

< 발제문 > 건강보험의 위기 원인과 그 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

■ 들어가며

김영삼의 실과를 논할 때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외환위기를 동시에 이야기한다. 현 국민의정부를 일찌감치 평가하기 시작하는 측에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는 보수와 진보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의약분업의 초발논의를 함께 했던 시민운동 진영조차 자기 운동의 성과를 따지기에 앞서 보건 의료 논쟁에서 한발씩 물러나고 싶어하는 현재의 모습은 보건 의료 개혁의 요원함을 이야기하기에 충분하다. 보건 의료 현실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진보적 보건 의료 운동 진영은 현실의 답답함을 목표의 원대함과 치밀함으로 바꿔나가려 한다. 이에 이번 쟁점토론에서는 그 동안 진부하리 만치 언급되었던 현행 공적 의료 보험 체계-건강보험의 모습을 진단하고 그 속에서 대안을 찾고자 한다.

먼저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핵심인 수가를 중심으로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찾아보고 건강보험의 살 길인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창의적 대안을 이끌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한다.

● 수가 -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인가?

가.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의 경과 : 의료보험의 재정 악화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는 명확하다.

1. 지역의보의 재정 악화 : 국가 지원의 미비¹⁾, 보험료 책정의 문제,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급여의 증가²⁾, 국가의 의보통합의 의지를 더욱 강화시킨 측면이 있음.
2. 직장 의료보와 지역 의료보와의 통합 - 통합과정에서의 방만함, 비체계적 관리운영.
3. 의약분업 - 자체의 추가비용요소 있음³⁾.
4. 의사파업 이후의 수가 인상 - 사회적 합의 없이 의사달래기 차원에서 이루어짐.

의료비(보험)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은 선진국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⁴⁾. 따라서 수가의 문제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요 원인일 수는 있으나 유일한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중소규모의 병원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는 의사들의 개원 바람에서도 볼 수 있듯 현 수가 체계는 분명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정부는 1988년, 보험료의 50%를 고용주가 내주는 직장 의료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국고지원율은 끊임없이 하락하여 1999년에는 26.1%까지 내려갔고, 국고 지원 미지급 총액이 5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 2) 국민 의료보험 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98년 40세 이상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1만명당 805명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8년도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율은 1만명당 563명으로 지역가입자보다 훨씬 낮았다.
- 3) 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 연구위원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연간 1조 1천 4백 86억 원의 의료보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 4) 미국의 경우는 의료비가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에는 5.1% 였으나 1994년에는 13.7%까지 증가하였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도 증가추세는 유사하다.

나. 수가의 세 측면

1. 수가의 이해 당사자들은 크게 세 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보험자 : 절대적으로 가장 큰 지출의 영역.
- 의료공급자 : 다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수익의 원천.
- 의료이용자 : 보험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
- 기타 제약자본 등도 포함할 것이다.

2. 의료행위에 드는 비용 보전의 측면

- 약가나 재료비 등
- 집세, 의료기기비 등의 고정비용
- 인건비 등의 가변비용

3. 의료인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측면 : 의료인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의료인의 치료에 대한 전문적 선택에서 제한이 적어야 한다. 최근 RBRVS⁵⁾ 등은 이런 합리적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서비스 행위로 인해 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크다. (서비스가 독점적이며, 무형적임)

4. 사회적 합의의 측면

- 의료의 공공적 특성 자체로부터 출발하여야 함.
- 수가의 결정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야 함.
- 결과물들이 사회적으로 수긍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수가의 결정은 의료인들이 소득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의료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히 몇몇 과목을 제외하고 의약분업에 의해 의료인들의 소득의 투명성이 한결 높아졌으므로 (카드 사용의 증가도 앞으로 이에 대한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들의 소득 수준의 합의가 보다 구체적일 수 있다. 또한 앞으로 급격히 개발될 신약물과 새로운 의료장비의 이용이란 측면에서 볼 때 최근 글리백 파동에서처럼 약제비 등에 대한 국가적 관리도 중요한 사항들이 될 것이다. 아마도 의약분업의 과정에서 치른 국민적 희생의 가장 큰 수혜자들 중의 하나는 제약독점자본일 것이다.

다. 현 수가 체계의 경과

1. 행위별 수가제 : 의료행위 당 수가가 가산
2. 수가고시제 -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여 고시함.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의료보험 시행 당시 국가의 강제적 기능이 우세했기 때문에 가능.
3. 수가 계약제 - 보험자와 의료인 대표와의 계약을 통해 수가 결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4. 포괄수가제⁶⁾: 질병을 분류하여 그 질병에 대한 의료행위를 일괄하여 수가로 인정. 몇몇 과목에

- 5) 미국 Harvard 대학 Hsiao 교수가 투입 자원에 근거한 행위별 수가 산정 모형인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 RBRVS(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을 우리 나라 사정에 맞게 재고안 한 것으로 RBRVS를 산출하는 공식의 기본 바탕은 가능한 합리적으로 의사의 업무량을 측정하는데 있다. 즉 의사의 업무량은 직접 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 업무(Intraservice work)와 의료서비스 전, 후의 업무(pre & postservice work)를 측정할 양에 실제비용과 졸업후 전문의 훈련 기회비용을 곱하여 RBRVS를 결정한다. 여기에 필요한 Intraservice work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Time 2)Mental effort(정신적 노력) 3)Knowledge, Judgment, Diagnostic acument(판단) 4)Technical skill(기술) 5)Physical effort(육체적 노력) 6)Stress등의 6개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만들어 작성하며, pre & postservice work에는 사용한 시간과 시간당 업무량 비의 함수로 계산한다.
- 6) 환자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 입원일수와 질병의 정도(중증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보험급여비(본인부담금 포

서 실시 증명7).

라. **현 수가 체계(행위별 수가)의 문제점** :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검사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쉽다.

마. 대안적 체계

1. 포괄수가제

- 질병의 분류와 입원일수에 따라 수가가 책정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지출을 줄일 수 있음8).

2. 총액계약제와 인두제

- 총액계약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사전에 진료비 총액을 계약하는 것. 공급자의 대표와 계약하여 공급자 대표가 각 공급자 개인에게 분배하는 방식과 보험자가 공급자 개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인두제: 수가의 단위를 의사가 담당하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9).

이 두 체계는 수가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의 양까지도 관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10). 그러나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완비(주치의 등록제11))가 이 제도의 중요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12).

바. 단기적 과제

1. 부당한 수가인상에 대한 조치 : 의사파업이후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2. 포괄수가제의 확대 : 일부항목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조속히 확대하여야 한다.
3. 의료전달체계 : 주치의등록제와 총액계약제 등의 시행 등을 고려할 때 전달체계의 왜곡을 방지해 주는 안 된다.

사. 장기적 과제

1. 공공의료의 강화 : 어떠한 수가 정책도 의료 공급의 90%에 육박하는 비율(병상기준13))을 사적 자

합)를 병원에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진료행위 수가를 모두 합해 총진료비를 산출하는데 반해 포괄수가제는 진료비 총액이 미리 책정돼 있다는 점이 다르다.

- 7)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모든 병원에서 8개 질병군에 한해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8개 질병군은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 백내장수술, 탈장수술, 맹장염수술, 치질수술, 편도선수술, 자궁수술 등 가장 많이 하는 외과수술이 대부분. 중증 정도 등이다.
- 8) 복지부가 시범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위별 수가제와 비교할 때 입원일수는 5.7% 짧아지고 항생제 사용량은 29% 감소하며 의료서비스 제공량은 1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일차의사는 약 1,000~3,00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 10) 총 의료비 예산이 미리 결정되어 있으므로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의료서비스 단위당 가격은 감소한다(의료비 총 예산 = 의료서비스 가격 × 의료 서비스 양).
- 11) 국민들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1차적으로 진료를 받고 상담할 수 있는 의사(단골의사 혹은 주치의)를 정하는 제도.
- 12) 총액계약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외래와 입원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적용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런 기준으로 의원과 병원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기가 어렵다. 일차와 2차, 3차간이 상호간의 경쟁으로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 13) 우리 나라의 공공부문 투자 실태를 살펴보면 총의료기관 병상중 공공의료 기관의 병상수는 99년 현재 10%에 불과하며 이는 영국의 96%, 이태리 76%, 프랑스 65%, 독일 49%, 등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

본에게 맡기는 상황에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의료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적의료에 대한 간접적 관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포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없앨 수는 있겠지만, 비급여항목의 개발이 이를 대체할 것이다.

2. 총액계약제와 주치의 등록제 : 포괄적 서비스를 통한 건강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불필요한 의료비의 증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사적 공급의 다수도 이 제도로 묶어내야 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가. 의료보장 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관한 담론의 형태

1. 의료기관이나 약국 방문 시 환자가 흔하게 묻는 말 중 이거 의료보험 되나요 라는 말이 있다. - 의료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전면적 신뢰의 부족
2. 의료보험 외의 비급여 진료를 질 높은 서비스로 오인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 의료공급자의 상업적 이익이 환자에 대한 최선의료 서비스인 양 오인되고 있다.
3.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주 내용인 의료보장에 대한 관념적 오해(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행태)가 행정관료, 의료서비스공급자, 언론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4. 의료의 공공성 담론이 한번도 사회화 된 적이 없다.
5.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보다 시혜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6.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책임이 강조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은 요구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7. 건강보험 재정 적자 이 후 국가부담에 대한 최소화 논리가 공공의료 확대논리를 앞지르고 있다. 이로 인한 민간보험(사보험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도입 의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나. 건강보험의 급여의 현재모습

1. 건강보험에 기대어 마음놓고 노후설계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국민 생활 지표 상 사망원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순환기계 질환의 경우 사망직전까지 많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다. 암 또는 성인병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모든 질환이 많은 국민의 마지막을 예고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고가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정도를 살펴보면 여타 다른 고액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2. 본인부담금의 비중이 고액진료로 갈수록 정액으로 늘어나는 부조리를 안고 있다.
3.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가 동반되는 진료에 대한 환자 부담도 다른 여타 질환과 같다.
4.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유소아 등 의료기관 접근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도 보장정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그러함에도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 본인부담제, 민간의료보험 도입의도 등 의료비용분배 문제의 핵심을 국민 즉 의료이용자의 문제점인 양 치환하고 있다.
6. 따라서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접근방법을 건강보험 재정확보와 급여확대를 통한 실질적 건강보장 프로그램의 마련으로 진행해야 한다.
7. 유럽이나 북미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갖고 대응하는 것도 시급하다. 우리의 경우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유무를 논하기 전에 의료공급자의 과도한 수요창출과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다. 보건의료 재정체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재원조달 기전은 정부예산, 건강보험, 의료보호의 3가지가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보호 치료 -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지불에 주로 쓰인다. 별도의 보건의료정부예산 - 건강증진, 질병 예방, 보건의료체계 개선등에 쓰인다. 그러나 2001년 정부예산 중 보건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제외할 때 예산대비 0.33%에 불과하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정부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정부 중 김대중 정부가 최하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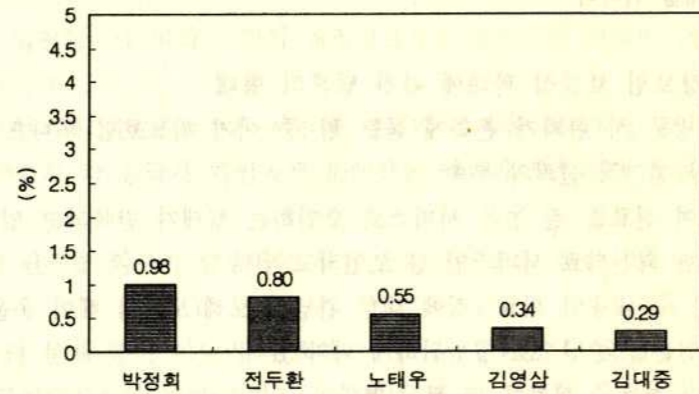


그림 1.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부문 예산의 비중 변화

라. 건강보험 급여수준

1. 건강보험 급여율은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를 합한 평균 63%이다.

- 1) 평균적인 급여율이 너무 낮다.
- 2) 고액진료비 부담 상한선이 없어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아주지 못한다.
- 3) 건강보험 재정적자 이후 급여 축소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 원인을 국민 전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결국 급여 확대 없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적자를 봉합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의 정액기준이 상승하였고 진료일수 365일 제한으로 만성병 환자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정질환, 특정약품에 대한 급여지정 취소 등을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마찰을 유도하고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진료책임은 개인의 역할로 넘기고 있다.
- 4) 만성백혈병 환자 치료를 위한 글리벡의 보험약 진입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에 꼭 필요한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고 또한 본인부담금 역시 평균적인 가계에서 부담하기에는 생계를 위협할 수준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5) 건강보험은 보험의 역할보다는 의료비 할인카드의 기능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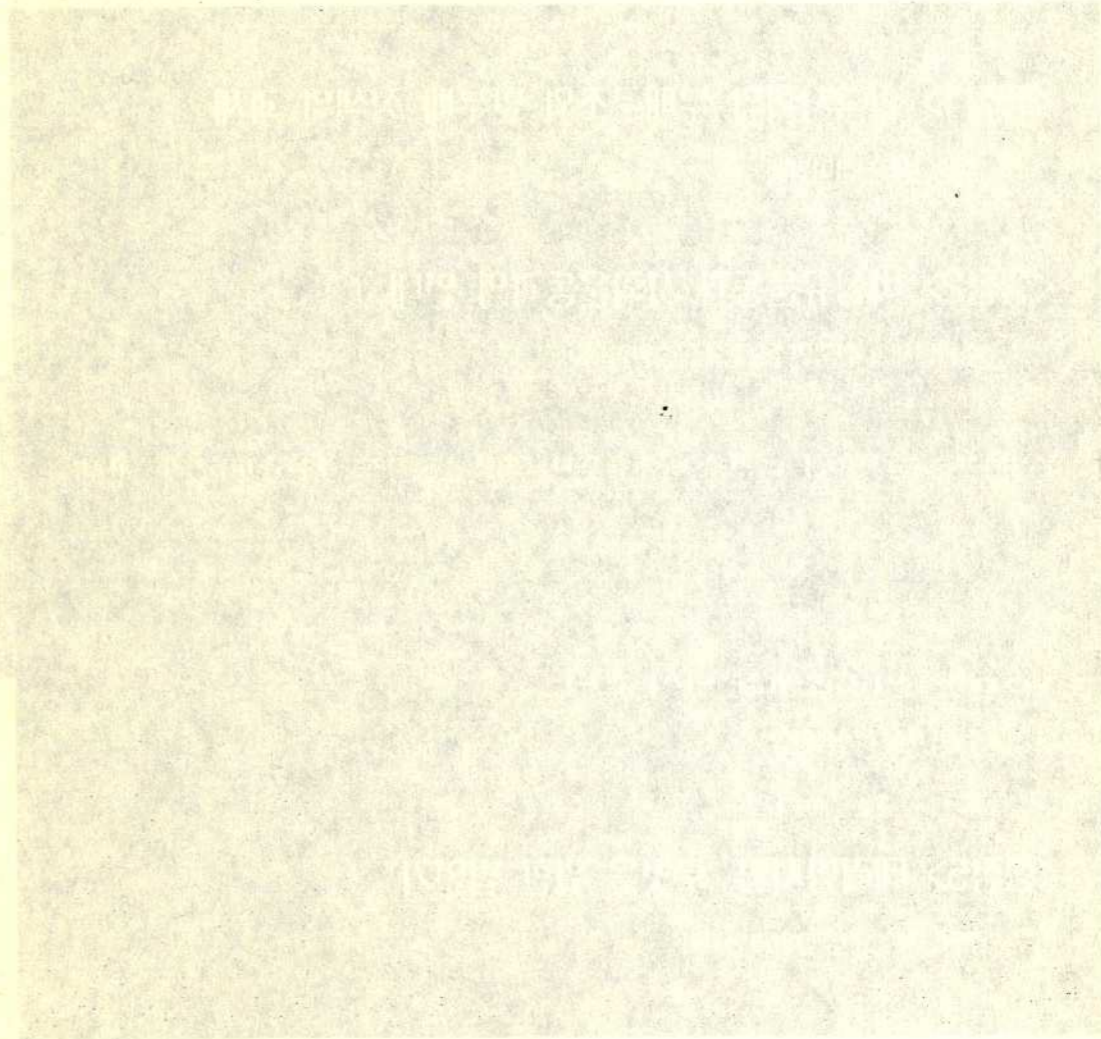
1. 고가장비 보험급여 인정, 365일 진료제한 철폐, 본인부담금 인상반대 등 그 동안 힘들게 만들어 온 건강보장 프로그램을 원상회복시킨다.
2. 이대로 가다가는 현재 약 63%에 불과한 보험 급여율 조차 위태롭다.
3.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 나라의 의료보장 시스템은 전반적인 사회 보장 프로그램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의료복지, 노인복지, 실직자대책, 장애인복지 등등 어느 하나가 빠져나가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이미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대다수 소실했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전액무료 프로그램에서부터 OECD국가기준 사회보험 프로그램까지 의료보장의 방법과 내용은 실로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모델은

'어떤 나라의 경우처럼'이라는 선택의 영역이 아닌 이들 나라의 발전경로에서 보여준 공과를 교훈 삼아 우리에게는 창조적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4. 창조적 대안의 실질적 내용은 전국민 평생건강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 운영의 원칙을 세워나가고 이를 위한 국민적 참여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때이다. 천부적 권리라 할 수 있는 건강권의 확보는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는 사회적 의제이다.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개개인 건강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서비스 개발과 국민 스스로 조직하고 검토하는 상호 견인시스템의 구축이다. 이제 사회 구성원 개개인 또는 조직화된 시민 민중 진영이 보건의료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쟁점 토론

- 2부 -

<쟁점1> 한국사회의 부패구조와 반부패 정책의 과제

주관단체 : 참여연대

<쟁점2> 비정규운동과 사회운동과의 연대

주관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

<쟁점3> 공무원·교수노조 출범으로 바라본 사회개혁의 과제

주관단체 : 공무원·교수 공대위

<쟁점4> 미군문제를 다시 본다

주관단체 : 녹색연합

<쟁점5> 테러방지법, 무엇을 위한 법인가

주관단체 :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사회의 부패구조와 반부패 정책의 과제

기획의도 | 진승현, 이용호, 정현준, 윤태식 게이트 등 임기말 정권의 부패 스캔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왜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권력형 부패가 끊이지 않는가?

본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의 부패유발구조와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부패방지법 제정 등 새로운 환경 하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반부패개혁 과제를 정식화하고 이에 걸맞는 반부패 시민운동의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 발 제 : 한국사회 부패구조의 특징과 제도적 대안 - 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 론 : 미정

〈 발제문 〉 한국사회 부패구조의 특징과 제도적 대안

장 유 식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I. 최근 권력형 비리 사건의 내용과 유형

1. 권력형 비리를 보는 시각

○ 정부의 시각

-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과거처럼 재벌과 권력의 유착은 없으며, 최근 사건들은 '사이비 벤처기업'이 정부 시책을 악용해 말썽을 일으킨 것...정부가 특정 벤처기업과 결탁한 건 없다" (2002년 1월, 김대중 대통령)

○ 학계의 시각

- "사회적 변혁기 즉 과도기에 더욱 많은 부패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도의 미비와 각각의 독립적 부패자가 창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즉 정부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 공동이윤 극대화를 하는 경우가 독립적으로 독립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우 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도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화사회로 전환하는 과도기이고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제도가 미비하면 부정부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강철규 1997).

- "다원화와 민주화의 추이는 특정 이익집단의 역할 및 로비활동, 그리고 민-관 접촉을 증대시켜, 종전의 '깊고 좁으며 은밀한 부패'를 얕고 넓으며 공공연한 부패'로 전환시키는데, 전자보다 후자의 해악이 결코 적다고 속단하기도 어렵다." (박재완, 1999).

- 고비용 정치구조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정-경유착과 비자금 축으로 하는 고전적 권력부패가 사라졌다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넉센스라는 지적도 상당수 있음. 이같은 견해가 위에서 언급한 일종의 '중심 이동론'과 배치되는 것이라 볼수는 없고 다만 양자가 착종되어 나타나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강철규 2002)

2. 이른바 4대 게이트의 특징들

○ 벤처기업의 금융사고가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확대

-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깊숙이 관여하는 전형적인 관치(官治)정책.
- 이러한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은 과거 정부로부터 금융상 세제상 혜택에 힘입어 성장한 재벌의 성장과정과 다르지 않아. (형태만 바뀐)
- 투명한 회계기준의 부재, 사이비 벤처의 시장진입·퇴출 시스템의 작동을 보장할 감독기구의 부재라는 허점을 노린 사건이 대다수

○ 현금대신 펀드 가입에·CB 발행·주식 공여 등의 로비수단이 확대됨

- 주식투자 또는 벤처투자분을 타고 주식 등 유가증권 형태의 이권제공이 확대됨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미비, 주식증감내역에 대한 재산등록제도 미비, 업무의 소득제한·이해상충방지 규정 미비 등 관련 제도의 허점과 금융감독기구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

○ 금융감독의 사각지대 - 신용금융·사설펀드·종금사등을 통한 조성

- 과거 정부시절의 시중은행 또는 제2금융권과 연결된 비자금 조성 관행과 대비됨
- IMF 전후 재벌기업에 대한 국내외 회계기준이나 감독체계가 엄격히 된 대신 그보다 훨씬 손쉽게 돈세탁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영역이 생겼기 때문으로 해석됨

○ 국정원 경제팀의 개입

- 안기부 예산 2000억 유용 사건 등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비리 개입은 DJ정부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용호 게이트에서 해경 동원등)
- 단, 국정원 전현직 경제팀의 대거 연루가 특징적(4대 게이트에 모두 연루)
- 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첨단 경제정보수집 등의 역할을 자임한 국정원 경제팀의 도덕적 해이와 기존의 공작적 개입 관행이 착종되어 대거 벤처비리 등에 연루됨

	문민정부 이전 (한보, 수서)	국민의 정부 4대 게이트
1. 로비의 주체	재벌	벤처
2. 로비 수단	현금로비	주식 및 펀드 가입
3. 로비의 대상	청와대, 정치인, 사업의 인허가 부처	청와대, 정치인, 금감원, 국정원, 검찰
4. 관련 금융기관	은행등 제1 금융권	금고등의 사금융업체
5. 로비관련 이권 내용	각종 인허가 및 금융대출	금감원, 국세청, 검찰 수사무마

○ 정관계로비에 의한 감독기구 및 수사기구 무력화 시도

- 금감원, 국세청, 검찰 등에 대한 조사무마 청탁 또는 압력행사 시도
- 정치권, 청와대 주변인사, 국정원, 전직 고위검찰을 동원
- 로비 대상 조사기관 종사자들의 개입 또는 연루 사실 확인됨

○ 청와대 주변인사의 개입 또는 접근 시도

- 정현준 게이트의 청와대 청소부 이씨부터 진승현게이트의 신광옥 민정수석, 이용호 게이트의 이기호 수석, 윤태식 게이트의 박준영 전 공보수석 김정길 전 정무수석 등 예외없이 청와대 개입

○ 초기 수사의 실패 또는 축소은폐

- 초기 수사의 미온성이 추가적인 제보나 여론의 압력에 따라 재수사 또는 특검수사 대상에 오름
- 수사기관은 핵심적인 증인 또는 혐의자에 대한 조기 신병확보에 실패하여 대다수가 해외도피(정현준 게이트의 오기준 사장·유조용 사장, 진승현 게이트의 김재환 전 MCI코리아 부회장) 또는 신병조기확보 실패(이용호 게이트의 이용호·이형택·이수동에 대한 부실처리 등)

II.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안

1) 공직자윤리법상의 제도개선

- 주식거래 변동내역 신고 및 공개등에 관한 법적기준의 문제
- 공직자재산등록제도, 이해충돌 회피제도, 선물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에 대한구체적 법률적 기준의 미비
- 로비스트 등록 및 공개절차의 부재문제
- 주식 양도차익과세에 관한 문제
- ※ 대통령아들들 비롯한 친인척의 비리 연루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친인척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도입

2) 국정원 관련 - 국정원 예산 및 기구운영 투명화 대책

-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감사기능 미비 - 예산의 총액보고제도, 국정원의 보고거부권 등 독소조항 폐지 및 국정원 경제단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적 국정 개입에 대한 대안으로

-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 예산회계에 관해 특례법 폐지, 국정원에 대한 예결산심사권에 대한 특례 폐지, 자료 제출, 답변 거부권의 폐지, 감사원의 회계 감사의무 부과 등

3) 검찰 개혁 가시적 개혁성과 확보

※ 검찰개혁 10대 과제

① 특검제 상설화 - 허구적 특별수사검찰청으로는 안된다.

특별수사검찰청은 완전한 인사와 예산의 독립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내부기구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검찰조직내부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인사·예산도 법무부장관의 제청이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간접적 통제가 가능하다. 특히 검찰수뇌부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검찰로부터 구체적 사건뿐만 아니라 일체의 지휘, 감독권을 배제함으로써 완전히 분리된 조직을 신설하거나 특검제를 상설화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것이다.

②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뽑자

사정기관의 총수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아무런 견제 없이 임명함에 따라 집권세력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로 임명되며, 각종 비리의혹 등 그 자질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첫걸음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고위직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재야 법조인 중에서 민주적이고 강직한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총장의 인사를 개방해야 한다. 또한 검사임명에 있어서도 일반 검찰조직 외에 재야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과감히 등용하여 검찰인사를 개방해야 한다.

③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 현행 검찰조직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상명하복과 직무승계이전권으로 구성된 현행 검사동일체 원칙은 독립관정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검사의 직무상 성격에 도외시 한 채, 검찰조직을 행정관료조직으로 엮어매고 마치 군대체제와 흡사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에도 배치되고 검사의 고유한 업무를 상관의 의사에 종속시켜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원천봉쇄하는 동일체 원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 7대 개혁과제

④ 재정신청 대상 전면확대 - 유신하의 인권제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규정한 것을 박정희 정권이 유신 시대에 이를 제한한 것이다. 현재로는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는 검찰 내부의 항고, 준항고와 헌법소원 밖에 없는데, 검찰 내부의 구제방법은 수사기관의 비리와 범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재정신청 대상 범위를 전면 확대해 현실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실인정권이 있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실효적 구제 수단인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법원이 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

⑤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인사 참여 - 인사 중립, 인사 개방

검사의 인사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만이 관여하는 구조 아래에서는 검찰인사에서 정치적 고려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격상시켜 의결을 통해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는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개방적인 구성이어야 한다. 아울러 현행 대검찰청 산하 검찰부도 검찰위원회로 바꾸고 이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검찰업무의 철저성을 보장해야 한다.

⑥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검사동일체원칙을 매개하고 검찰총장의 정치적 종속적인 인사제도에 의해 집권세력의 의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행정부의 검찰에 대한 견제는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가가 아닌 정치인이 이를 지휘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모순이 있으므로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

⑦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 - 한국판 시민배심원 도입하자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국민참여의 길을 확대해야 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경우처럼 검찰기소에 대한 불복절차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처분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적부에 대한 사후적 심사의 성격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은 일반인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한다.

⑧ 검사윤리강령 구체화 - 형식적 윤리강령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전별금, 직위를 이용한 편익제공, 전화변론, 이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적절한 장치가 없다. 현행 검사윤리강령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어 개개의 구체적 행동이 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또한 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처벌이나 벌칙도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검사윤리강령에 검사들의 떡값, 전별금, 편익제공, 향응 수수 등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과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규정을 적시해야 한다.

⑨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 인권보장의 첫걸음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밀

실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진술거부권의 제약 등 불법수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입회하여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⑩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 국민의 합의로 검찰개혁 이뤄야 합니다.

위의 모든 개혁과제들을 포함한 검찰개혁은 검찰이나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정치권으로만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검찰개혁 논의는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공방으로 개혁의 지연과 원칙의 왜곡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 법조계와 시민단체까지 포괄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법조계의 전문성, 시민단체의 공익성, 정치권의 구체적 입법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

4) 음성정치자금에 대한 통제장치에 대한 대안들

- 돈세탁방지제도의 개선 -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CTR제도) 도입.
- 음성정치자금 투명화 및 양성화 문제
 - 정치후원금 수입 지출내역의 공개, 음성 정치자금 양성화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인 모금한도 완화 문제. 단일 계좌 사용, 수표사용 및 정규 영수증 사용의무화문제
 - 선거 공영제 및 국고보조금 확대의 문제. 논의 전제로 국고보조금 사용 투명성 및 부실 회계보고에 대한 제재 강화문제

5) 금융 및 벤처관련 대책

- 중소 금융기관(금고, 신협)의 소유·지배·경영구조의 개선
 - 사외이사제도 등의 강화
 - 출자자 대출, 동일인 공여한도 초과대출 등 불법 대출 관행 엄격규제
- 시장기능활성화 방안
 - 신협, 금고 등 중소기업의 경영정보 및 감독 당국에 의한 제재 사실 공개
 - 부실 금융기관 퇴출 시스템 정비
- 중시 불공정행위 근절
 - 비상장기업의 CB, BW 발행 규제
 -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증권사기 범죄 적발시스템 정비
 - 증권 집단소송제도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제도 도입
- 금감원 직원의 업무 투명성 및 비리 근절 대책
 - 주식소유, 사설펀드 가입 규제, 전직 금지
 - 금감원 관련 업무 정보 공개 강화
- 코스닥 시장 건전화 방안
 - 공시강화
 - 부실 벤처 퇴출 시스템의 정비 **

비정규노동자 운동의 사회적 연대

기획의도 | 토론회는 "비정규노동자 운동의 사회적 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정규노동자, 노동조합, 비정규활동가, 시민사회 운동가 등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발제가 없이 비정규노동자는 비정규노동자 입장에서 사회적 연대운동의 필요성과 경험에 대한 내용, 노동조합과 활동가 및 시민운동은 각자의 입장에서 사회연대적 비정규노동자 운동의 필요성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연구자는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포럼]이 되도록 토론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사회 : 민주노총
- 각 부문별 발제
 - 박승흡(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이상학(민주노총 정책국장)
 - 김기선미(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 임미령(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위원장)

공무원 · 교수노조 출범으로 바라본 사회 개혁의 과제

기획의도 | 오늘날 대학은 사학재단, 관료, 정치인이 음성적으로 결탁된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파행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다. 진리를 추구하고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연구와 교육을 통해 생산하는 대학의 중대한 책무가 파괴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학의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뼈아픈 자기 반성으로 진정한 대학개혁의 주체로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개혁 나아가 사회개혁의 의지가 한편에서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하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한 시민·노동단체들의 논의를 모으고 향후 교수노조가 진정한 대학·사회개혁의 주체로 우뚝 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강요당한 비민주적 침묵의 사슬을 끊고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공직사회개혁의 주체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그 동안 빼앗겨 왔던 노동기본권을 획득하고 주체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해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당당한 외침이다. 그 어떤 강압으로부터 탈피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사회와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본연의 임무를 되찾는 공직사회개혁의 첫걸음이 공무원노조 출범인 것이다. 이를 통해 개혁의 과제와 실천, 그리고 연대에 대한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교류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개발·여성·문화 등 각 종 사업이 시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진행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각 시민단체 고견을 듣고자 한다.

· 사회 : 박석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발 제(각 15분)

1. 교수노조 사업기조로 바라본 교육·사회개혁의 과제 - 이성백(교수노조 기획정책실장)

2. 공무원 노조 건설과 사회적 역할 - 김정수(전공권 정책연구소장)

· 토론(40분) : 김성수(민변), 서형원(환경연합), 민주노총

· 전체토론 : 20분

<발제 1> 교수노조 사업기조로 바라본 교육·사회개혁의 과제

전국교수노동조합

I. 교수노조 건설과정

1. 대학교수들의 전교조 참여 및 교원노조 필요성 제기

- 1987년 전교조 결성에 대학교수들이 동참
- 1989년 전교조 합법화에 대학교수들이 동참
- 전교조 내 대학위원회를 구성하고 550여명의 교수가 조합원으로 가입

2. 교수노조 연구 필요성 제기 및 연구

- 「대학 자주화 백서」를 통해 교수노조 필요성 제기 (1990. 12. 12)
-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강화와 그 폐해 심화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대
- 민교협 교수노조 추진 : 교수노조 연구팀을 구성하고 워크숍, 토론회, 지역간담회를 거쳐 '교수노조 건설의 타당성'을 공유함
- 공무원과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개정 청원(2000. 10. 11)

3. 추진기획단 활동

- 민교협 교수노조추진기획단 발족: 2001년 10월 31
- 주요활동내용: 전국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주요단체 임원 간담회 진행, 홍보물 및 정책자료집 발간, 대언론 홍보활동, 홈페이지 개설 등

4. 준비위 활동

- 교수노조(준) 발족 : 2001년 4월 14일 서울대문화관
- 총 617명의 발기인(81개 대학 참여) 참여
- 지역준비위 조직건설 조직현황
- 발기인: 703명(98개 대학 - 2001. 7. 25 집계상황)
- 지역준비위 건설

5. 전국교수노동조합 출범

- 2001년 11월 10일, 서울대
- 1004명의 조합원, 9개지부 조직화
- 교수노조 5대 정책방향
-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주적인 대학운영구조 확립
- 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 학문재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환경 구축
-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교권과 교수 신분보장을 위한 활동
-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체제 건설

II. 2002년도 정세

(1) 객관정세

1) 세계적 신자유주의 공세의 심화와 그 정책담론의 강화

① 현재 세계자본주의는 미국경제의 침체, 일본경제의 장기 저조현상, 나아가 발전도상국의 경제위기 등 구조적 위기국면에 놓여 있다. 이 구조적 위기조짐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자본은 '반테러' 전쟁을 대대적으로 활용하려 기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일본 등의 경제위기도 세계자본주의의 불안정한 연쇄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②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심화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공세심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나아가 지배적 정책집단(정치인과 관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측적 신자유주의 담론을 강화시킬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위력적 자본공세 속에서 발전도상국의 노동자, 민중, 서민들의 생존과 생활은 해체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은 민중부문 내부의 격차와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보수화의 국제지형과 국내 권력재편 전망

① 2000년 말 미국의 정권교체는 신보수우파들의 정치적 전면화를 야기했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신냉전, 보수강경의 개입주의 정책이 자유주의적 관여정책을 대체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 코이즈미정권의 수립을 계기로 미일 양국 간에는 일종의 신냉전적 국제보수동맹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북 강경정책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한미일' 보수동맹을 강화하였다. 남한은 여기서 정치적 하위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한편 2000년 총선거 이후 한국에서도 보수적 정치지형이 고착, 강화되어 왔다. 보수야당의 부정캠페인(negative campaign)과 우위 확보, 그리고 민주당 정권의 보수화가 그것이다. 김정권의 레임덕은 퇴임 3년 전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현정권의 마지막 '카드'인 햇볕정책조차도 국제 보수동맹과 국내 야당세력의 반발로 무력화되어 왔다. 더불어 현정권을 둘러싼 엄청난 부정사건들의 폭로로 말미암아 재집권의 전망은 어두워졌다.

③ 현재의 국제적 보수동맹과 국내 정치지형의 보수화로 볼 때, 향후 권력재편은 보수적이고 신냉전적인 조류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보수적, 신냉전적 권력은 국내정책 면에서 국제자본과 국내자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리하는 자본정권[정권의 파쇼화]이 될 가능성이 크다.

④ 그런데 2002년의 국면은 이러한 권력재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항쟁하는 '선거국면'이 기도 하다. 현재 민중세력[혹은 진보적 민주주의세력]이 전략적 퇴조상황에 있으므로, 선거국면에서 민중들의 주체적 선택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제도내의 정치적 선택지는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민중적 삶을 호전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하기 힘들 것이다.

⑤ 결국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운동은 (i) 신자유주의 공세와 동시에 진행될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ii) 국제자본 및 국내자본의 보수적[파쇼적] 권력 성립에 대비하는 내용과 편제를 갖추어 동시에, (iii) 당면한 선거공간을 민중운동[운동주체]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는 유연한 전술을 가져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⑥ 올해는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스포츠 공세'의 해이다. 총자본은 현재의 구조조정 문제와 제반 개혁의 요구들을 '스포츠 정치'를 통해 우회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대체로 운동이 월드컵 공간을 잠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운동의 상승발전을 분절시키는 효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3) 노동운동 정세

① IMF체제 하에서 자본 공세 4년을 견뎌온 지금 노동운동 진영은 여러 면에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 악화,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와 계급 내부 계층화 심화, 산별노조 전환의 지체, 조직내 민주주의의 위기와 지도력 부재, 국가·자본의 세련된 분할 지배와 통제, 조직물의 하락과 조직 확대의 지체 등 위기는 전방위적, 구조적인 것이었다.

② 2002년에도 정리해고, 해외매각-민영화 일변도의 구조조정이 계속될 전망이다. 2월 철도노조의 파업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대중의 투쟁이 빈발할 것이나 선거정치, 월드컵 속에서 집중점을 갖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노동시간단축투쟁의 향배는 또 하나의 변수이다.

③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공무원, 교수집단의 노동기본권 문제의 경우 긍정적인 방향에서 제도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전자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자본 전략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자본의 반대를 넘어설 수 없다. 또 후자의 문제는 정치적 부담이 크므로 보수 강화의 정치국면 속에서 이를 추진할 주체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강력한 투쟁이 전개되어 정권 주도의 법개정이 시도된다 할지라도 유의미한 내용을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

④ 선거 국면에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일정 정도 시도될 것이나 계급적 정치세력화의 내용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4)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의 핵심전기로서 계약제·연봉제

① 현재 대학 및 교육현장을 지배하는 집단은 재경부를 필두로 한 예측적 신자유주의 테크노크라트이다. 그들에게 교육이나 연구, 인문적 지성이란 의미가 없다. 오로지 의미 있는 것은 '효율성', '시장'이라는 유행일 뿐이다. 기생적 교육관료들은 재경부 테크노크라트의 지휘 하에서 대학 시스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강요하고 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재편정책은 부패사학재단의 천민적 대학지배, 사적 이윤추구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② 현 단계 대학정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교수 계약제·연봉제의 도입과 교수노조의 합법화이다. 현재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목표점은 (i) 시장도태 방식의 무자비한 대학구조조정, (ii) 소유권 중심의 대학지배구조, (iii) 대학사회에 대한 관료통제의 강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반대세력이 교수들이다. 따라서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은 계약제·연봉제로 교수집단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③ 계약제·연봉제의 도입과 대학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관료들의 '신자유주의정책은' 제도 정치의 보수화와 더불어 중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계약연봉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정책들이 그 뒤를 이을 것이며 사학을 중심으로 무자비한 교권탄압 및 노동권 박탈이 진행될 것이다.

④ 이런 정세 속에서 교수노조의 불법시비 또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공공성 강화투쟁이 전개될 경우 교수노조에 대한 전면 탄압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교수노조와 전공련을 분리하여 교원노조법 형태의 '합법화'를 용인하는 유화책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선거를 앞두고 교수노조에 대한 전면탄압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⑤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된 현 시점에서 기생적 교육관료를 정치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계약제 '시행령'을 철회시키는 등 정권의 방침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공공성 강화'와 '교수노조 합법화'를 각 정당 공약에 포함시키거나 정치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2) 주체정세

1) 교수노조의 조직화의 미진과 헌법노조 상황

① 우리 교수노조의 경우, 조직형성의 초기적 발전단계에 있다. 따라서 조직적, 전략적 미성숙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 또한 없다. 현재 조직화 상황은 약 1000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으며, 중앙집행체계가 막 꾸러진 상황이다. 전체교수 대비 2% 정도의 조직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조직의 일부 상설위원회, 지부 및 지회 체계가 미조직된 상태이다.

② 조합원들의 조합정체성(Union identity)이 분명하게 형성되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cf. CMS가입율) 따라서 단위대학, 지부의 조직주체 형성이 지체되고 있으며, 조합원을 통한 수평적 조직확산의 양태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현재 교수노조는 연구팀, 추진단, 준비위원회 단계의 교수대중들의 초기적 관심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의 실체감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③ 교수노조는 현재 '헌법노조의 지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한 노조적 활동패턴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제도개혁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개혁투쟁과 합법성 쟁취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합법성 쟁취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전공련과의 공대위 구성 등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합법화의 관건은 말할 것도 없이 주체역량을 배가하는 일이며 이는 계약제·연봉제 투쟁의 성패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2) 교수운동 주체의 분화와 역량부족

①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전근대적 대학지배구조의 전횡을 막고,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응주체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여야 할 교수조직들을 하나의 통일된 목표하에 묶어내는 공동투쟁이 절실하다.

② 그러나 현재 대학문제에 접근하는 교수운동조직들은 힘있는 추동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대학단위의 교수협의회의 방향 상실과 동력부족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교수노조는 국교협, 사교련, 전교련 등과 함께 대학 공공성쟁취 흐름을 형성하면서, 교수협의회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형성하려는 노력을 단위대학별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학주체로서 대학노조와 학생조직을 포괄하여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야만 할 것이다.

3) 노동 및 사회운동의 연대·지원조건

① 우호적인 사회적 여론과 사회운동주체들의 강력한 지원은 2002년 투쟁에 관건적 요소이다. 교육운동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대학재편 반대, 대학(교육)의 공공적·민주적 개혁' 슬로건을 매개로 연대를 확보할 수 있다. 학생들의 수확권 보장, 공공성 확보는 시민, 학부모들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고리가 될 수 있다.

② 노동 및 민중운동의 경우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매개로 한 연대의 여지는 크다. 다만 여전히 노동·민중운동과 교수직 간 대중적 정서의 괴리감은 존재하므로 대학개혁운동에 대한 자연발생적 지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 개혁운동의 사회적·사회운동적 맥락을 일반화한 논리를 제시하고 적극적 자세로 연대를 모색해 가야만 할 것이다.

③ 시민운동의 경우는 문제가 약간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시스템의 '비효율성'과 '과잉성', 종래

'왜곡된 교수상'에 착목하는 일부 시민운동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 또한 대학의 공공성과 현행 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학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집중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④ 학생운동 또한 신자유주의교육 반대, 공공성 증진을 위한 대학개혁, 특히 교권확보투쟁에 주요한 연대세력이다. 다만, 협력에 있어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 대학공동체에서 교수권과 학생권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III. 사업방향

(1) 조직사업: 교수노조의 실체화와 조직확대

① 현재 교수노조는 출범초기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대중 및 국민들에 대한 교수노조의 실체화는 물론, 조직화 등 여러 면에서 미숙성을 보이고 있다. 2002년은 투쟁을 통해 노조를 대중적인 실체로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

② 교수노조는 현행 교수운동주체가 허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변에 지원역량을 광범위하게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교수노조의 정치적·정책적 역량과 그 핵심적 존재의의를 투쟁 속에서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③ 교수노조는 공무원 노조운동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합법화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독자적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제 철폐투쟁은 교수노조를 사회적, 법적 실체로 만들어 내는 조직적 투쟁고리가 된다.

(2) 투쟁사업: 신자유주의 대학재편 저지, 공공적·민주적 대학개혁

① 현재 '교수 계약제·연봉제' 철폐는 대학의 공공적·민주적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시행령의 통과이후, 교육관료들은 이를 교육현장에서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교수들 및 교수주체들의 반대운동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철폐운동은 교육부 및 정권을 대상으로 한 집약적 운동과 대학현장에서의 대중적 투쟁을 결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 측의 정관개정 시도는 투쟁의 전기가 될 수 있다.

② 신자유주의 대학재편 반대운동은 현재 교수노조의 역량만으로 대응은 부족하다. 1월 21일-23간의 시한부 농성을 통해 획득된 교수 7단체의 공동투쟁을 더욱 강하게 전개해야 하며, 대학현장 수준에서 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민교협, 직원노조, 학생회 등의 연대주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과 전국수준의 '시장주의 대학재편음모 분쇄, 대학 공공성 쟁취, 올바른 대학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교수7단체, 대학노조, 학생단체, 학부모단체, 전교조, 민주노총)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③ 상반기에는 운동의 일반적 성격—대학의 공공적 개혁—을 분명히 하고, 운동의 초점을 교수 계약제·연봉제 철폐, 대학재정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반기는 계약제·연봉제 투쟁을 유지하면서도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제반 제도개혁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3) 정책사업: 대학개혁과 사회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사업

① 교수노조는 자기 개혁적이고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노조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지식전문 노조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초기 국면부터 정책실과 각 전문위원회, 연구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현실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② 2002년의 사업으로서는 교수노조의 장기적 활동방향(강령)과 당면한 주요투쟁사업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핵심적 몇 가지 주제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대학개혁 정책개발(대안)사업의 결과는 대대적으로 공표하여 교육부, 국공립대학의 관료적 당국, 사립재단의 전근대적·비도덕적 지배구조와 대학(교육)정책의 무능력과 기능부진 상황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일정과 사업흐름

월	각관일정	운동일정	교수노조의 흐름		
			조직사업	투쟁사업	정책사업
3	개학 코이찌미 병한	제1차 민중대회 반전·평화군속 코이찌미반대 전교조단합준비 전공노 출범(3/24) 컨퍼런스	교수노조 합법화운동 1	중임교수주체 지역홍보 신문광고홍보물 배포(대교수) 문제대학대응체제 중심 지역주체조직화 대학현장 설명전 전국 사명운동(교수일반) 시작	교육부연구 팀 개시 교수업적평가 팀 개시 사립대학지배구조팀 개시 강사문제 了
4		전교조 단합준비 교조법개정운동 6	일상적 기업권유 홍보자속	지역별대응체제의 완성(공대위/주요현장) 지역중임심포지움(교수); 대시민 설명회 지역별 교수대회(4월-5초) 전국사명운동 취합-신문광고 지역별 전국동시농성	
5	지방선거 후보등록(29/9) 월드컵(31)	반전평화군속 2차민중대회 전교조단합원료	교수노조합법화운동 2 d. 교조법 개정운동	TV 집중대응 1회 전국교수대회 교수대표 농성-청와대 압박 지지(광고) 조직화(개발단체 개인 원로) 하반기 대응주체 편제 점검	
6	지방선거(13) 월드컵(30)	전교조단합원료 노점탑 반일본군사회 민교 집부교체	자부·지회순회/교육준비	교수주체 점검 대학별 홍보 전국 공대위 워크숍 하반기 계약제 신규채용 저지 개시	
7	하계방학	3차민중대회 전교조 교육위원선거	지회·자부순회연수 조직점검·강화(7월-8초)	현장간사·대응체제 하반기 공동프로그램 조정	교육부 7(1차) 사립대학 지배구조 了 업적평가 了
8	하계방학	전교조 선거국면활용 6	교수노조 합법화 운동 3		대학의 건설적 존재방식 了
9	추석(20-2) 아시안게임(29)			전국교수대표 시한부 단식농성홍보개시 공동행동요구·지침 발표 지역별 지지운동 제2차 전국교수대회	
10	아시안게임(14)	전교조 총력투쟁		대학지역의 전국적 농성 공대위 대표단의 교육부항의·요구 대학개혁 촉제한미당-각대학별 통합성 『대학과 교육의 적』 백서 발표 전국교수 삭발단식 농성	
11	대통령선거 후보등록(27/8)		교수노조 합법화운동 4 (대학개혁 패카지)	전국대학주체의 ... 대학 범국민대표 조직가지회건 청와대 제3차 전국교수대회 선거후보와 대학	
12	대통령선거(19) 동계방학				

별첨) 주요투쟁사업 : 대학의 공공성 확보 및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폐투쟁

■ 교수계약제·연봉제 추진경과

- 교육공무원법 줄속 개정 : 1999년 1월 6일 - 당시 국민적 관심사였던 교원노조법안과 교사정년을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교수인사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거의 논의되지도 않은 교수계약임용제를 슬며시 끼워넣어 줄속 개정함.
- 사립학교법 개악 : 1999년 8월 - 사립학교법 개악과정에서 사립대학 교수계약임용제를 끼워넣어 줄속개정함.
- 국립대학발전계획(교수계약제·연봉제 등) 확정 발표 : 2000년 12월
-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 2001년 11월 12일~12월 3일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 보도자료 발표 : 2001년 11월 20일
- 교육인적자원부 교수노조 탄압 가시화 : '전국교수노동조합 설립 관련자에 대한 조치촉구 공문 발송'(2001년 12월 3일자)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악 : 2001년 12월 31일 국무회의 통과

■ 투쟁경과 및 계획

- 1) 교수계약제·연봉제철폐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 결성 : 2002년 1월 7일
(상임대표 : 고흥석 국교협 회장, 집행위원장 : 박거용 교수노조부위원장)
- 2) 투쟁경과 및 향후계획
 1. 15 전국교수투쟁본부, 교육부총리 공식 협의면담
 1. 21~23 교수7단체 집행부 시한부 농성투쟁
 1. 23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초청간담회 : 공대위 구성이 제안됨.
 1. 22~2. 26 교육부 앞 릴레이 1인시위 진행함.
 2. 19~22 교수투본 대표단 지역순회 간담회(서울, 강원, 전북, 전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청지역 순회)
 - 3월 전국교수서명운동 전개, 공대위 결성 진행, 홍보활동 : 전단, 스티커 배포
 - 4월 전국순회토론회, 전국교수 서명발표 투쟁, 범국민 서명운동
 - 5월 전국교수대회, 청원운동 준비활동
 - 6월 대국회 활동 : 법개정운동
 - 7~8월 임시국회 시기 총력투쟁 : 교육공무원법 개정 요구
- 3) 『(가칭) 대학(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활동
 - 3월 4일 준비모임 구성 후 참여단체 확대 진행 중, 3월말~4월초 공대위 결성예정
 - 참여단체(3월 19일 현재) : 교육학생연대, 민주노총, 역사문화아카데미, 전교조, 전국강사노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전국교수투쟁본부(민교협, 국교협, 교수노조, 사교련, 전국교수회, 전교련, 학단협), 전국대학노조, 전국민중연대, 정교협(가나다 순)
 - 활동목표
 -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대학발전계획 철폐
 -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폐로 교직원의 비정규직화 저지
 - 대학지배구조의 혁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 교육재정 GNP 6% 확보 및 등록금자율화 강행 철폐
 - 전임교원 확보 및 대학강사의 법적지위 확보
 - 교수노조 합법화 및 교수협의회 법적기구화 **

〈발제 2〉 공무원 노조 건설과 사회적 역할

김 정 수 (전공련 정책연구소장)

I. 전공련의 탄생과 공무원노조 건설

1.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태동과 발전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10년 간 끌어온 교직원노동조합을 1999년 7월부터 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기로 하고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허용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은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해방 후 50여년이란 지나간 세월 동안 억눌렸던 질곡을 깨고 전국의 공무원들은 앞을 다투어 직장협의회 설립을 가속화하여 현재 지역별, 직능별 190개 단체의 90000여명의 회원이 가입원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규약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세 차례의 연인원 3만명의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실질적인 전국 90만 공무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로 발전하였다.

2. 공무원노동조합 건설을 목표로 새롭게 체제를 정비한 전공련의 투쟁과정

지난해 2월 3일 전공련 규약을 개정을 통하여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목표로 탄생한 전공련은 3월 24일 서울대학교에서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초대 전공련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교조, 전국교수노조,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49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현재 54개 단체로 확대되고 광역시도별로 지역별 공대위가 모두 구성되어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 투쟁에 강력하게 연대하고 있다.

6월 9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공무원 50년사 전대미문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공무원 7000여명이 모여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주제로 평화적인 집회를 하였고, 가두행진도 하여 공무원노동조합 건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7월 14일 6·9창원대회 주동자로 전공련 차봉천위원장을 비롯한 전공련 간부4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에 항의하고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규탄대회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공대위와 서공련 회원들이 개최하였다.

7월 28일 부산광역시 부산역 광장에서 제2차 전국공무원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을 갈망하는 전국의 전공련 산하 공무원 1만여 명이 규탄집회를 열고 탄압에 굴하지 않는 강력한 단결력과 우리의 열망을 보여주었다.

한편, 공무원노조의 대상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법형태로 추진하고자 이미 헌법노조로 출범한 교수노조와 완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는 전교조, 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11월 29일 공무원노조 공동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접수하였다.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PSI 국제공공노련 세계집행위원회에서는 한국내에서 전공련을 공무원노동조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PSI 가맹단체로 승인하여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를 한층 강화하였다.

11월 4일은 지난번 경남과 부산 두차례의 전국공무원대회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

을 정면으로 뒤집는 서울대회로 개최하여 보라매공원에서 전국의 공무원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1만여명이 모여 공무원노조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이제 공무원노조는 전국적 차원으로 확산된 대세임을 유감없이 대내·외에 보여주었다.

12월 2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3월24일로 확정시킨 헌법노조의 결성시까지 전공련과 각 지역·직능연합 그리고 각 단위 직장협의회가 노조건설과정에서 추진하여야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전국대표 15인으로 구성된 노조추진기획단은 2002년도 2월 중순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논의를 거듭한 끝에 공무원노조규약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였다.

이와 함께 각 지역별로는 공무원노조결성의 의지를 다지고 결의를 확고하게 굳히기 위한 각종 수련회를 계속하여 실시하고 회원들의 강력한 결함을 계속 끌어내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노조건설을 위한 전공련의 준비는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역사가 보여주듯 현실에 이끌려 법이 뒤쫓아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공무원노조의 결성은 가시화되고 있다.

3. 2002. 3. 24 공무원노조 결성을 위한 전공련의 사업방향

2002년 3월 24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위하여 전공련은 두 줄기의 커다란 사업방향을 세우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공무원노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노동자성을 기본으로 결국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향상이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 노동운동 일반이 갖는 역사발전과 사회발전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병폐와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실천을 통한 대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전공련은 이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각 지역별로 확대 설치하여 구체적 실천계획을 통하여 부정부패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공무원조직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내부비리고발자 보호 및 고발운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비리고발센터 설치와 부정선거 감시·고발센터를 설치하여 선거개입 공무원 및 선거철 특정후보에 대한 줄서기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은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방향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노조 결성에 공무원조직원의 대동단결을 통한 확실한 결함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노조추진기획단이 마련한 노조규약은 민주성·자주성·주체성을 담보하는 조직운영을 담고 있으며, 전국단일노조로 가장 강력한 단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완전한 노동3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에 전공련 산하 모든 단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현재의 직장협의회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실천하고자 전단위는 노조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노조결성 후의 정부의 탄압에 대비하여 강고한 투쟁의지를 바탕으로 결사적인 노조합법화 쟁취 추동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노조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달이 1만원 이상의 노조기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있기도 하다.

2월 24일 개최된 전공련 마지막 대의원대회에서는 노추단에서 마련한 공무원노조 규약안을 확정하였고, 3.24 노조결성의 구체적 실무를 맡는 실무준비팀을 구성하였으며, 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과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현재 전공련 산하 전조직은 각 지역별로 공무원노조결성 결의대회를 잇달아 개최하여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뜨거운 열기를 3. 24 노조결성시까지 고조시켜 3월 24일 노조결성은 이른바 90만 공무원과 국민적 관심 속에 축제의 분위기로 치뤄낸다는 계획이다.

II.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전망

1. 전공련에 대한 정부의 탄압

행자부는 전공련이 지난해 2월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총연합으로의 방향 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전국의 행정기관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총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하여 참가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는 월권을 자행하였고, 3월 24일 제1차 대의원대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당초 연세대학교를 집회장소 사용허가를 받아놓은 것을 연세대학교에 압력을 행사하여 행사 당일 장소 불허 조치토록 하였으며, 전공련은 긴급히 집회장소를 서울대학생회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로 변경하여 개최하였지만 대회 진행도 중 서울대 학생처에 압박을 가하여 행사도중 지하강당 전기를 차단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3월 24일 대의원대회를 사전에 방해하기 위하여 정부는 참가대상 대의원들에 대하여 개별 접촉을 통하여 공갈과 협박을 감행하였으나, 정부의 참가자 사법처리 및 징계방침 등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치자 정부는 행사를 주동한 혐의로 차봉천 위원장과 부위원장단 등 핵심 간부들을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여 7차에 걸쳐 계속 소환요구하는 가운데, 전공련은 지속적인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6·9 창원 전국대회를 훌륭히 치러내자 정부는 당초 전공련 위원장단 전원에게 사법처리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7월 6일 6·9 창원 전국대회 주동 혐의로 전공련 차봉천위원장과 경남지역 김영길 대표, 부산지역 이용한 대표, 전공련 고광식 사무총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현재 전공련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핵심간부들은 불구속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정과 최근 정세

전공련의 지칠 줄 모르는 투쟁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말 경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연내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현안사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입장을 흘리면서 여론을 살피고, 뒤늦기는 하지만 노사정위원회에 공무원노동기본권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노동부 소관사항으로 다루지 않고 있었으며, 행정자치부 복무조사담당관이 공무원노동기본권 문제를 다루었고, 전국연합체인 전공련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면서 단지 개별 직장협의회 차원으로만 인정하고 있었으며, 공무원 당사자를 대변할 위원 또한 허용하지 않는 상태였다.

이렇게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논의한 공무원노동기본권 허용 방향은 전교조와 같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형식과 기업별노조 형식, 가입대상, 과도한 제한, 단결권과 협약체결권이 없는 교섭권만 인정하는 불완전한 기본권, 교섭범위의 최소화 등 가급적 노조의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뿐인 노조로 만들어 주고자 연구하고 논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금년 2월초에 내놓은 논의결과마저도 정부측인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노동부의 입장이 엇갈려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부랴부랴 급조한 정부안을 2월 27일 공개하였다.

이렇게 내놓은 정부안은 노조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직' 등으로 하고 노동3권

중 단결권과 협약체결권을 배제한 제한적 교섭권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태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마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 수준에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노사정위 논의가 전공련 등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정부측 입장에 대한 명분을 갖추는 들러리용으로 전락하여 올해 1월 내부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쟁점사항을 그대로 정부에 제출하였기 때문이며, 정부는 지난해 드러낸 허용범위 즉 연합체인정, 1.5권 보장, 6급 이하 가입 등의 기본방침을 고수한 정부안을 노사정위로 보내 노사정위를 다시 전방위로 내세워 당사자 여론수렴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강행하는 전국순회 공청회를 무리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른바 헌법노조로 전공련이 자주적으로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어찌해서든지 3월 24일 전까지는 모든 요식행위를 마치고 껍데기뿐인 정부안을 국민 앞에 제시함으로써 또다시 90만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에 대한 대의명분에 김을 빼는 기만적 행태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전공련은 일방적인 정부안에 대한 당사자 의견수렴이라는 형식절차로써 밀어부치기식으로 강행하는 6개 도시 순회 공청회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의도대로 추진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원천봉쇄를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내놓는 '형식적 허용, 실질적 불허'식의 정부안에 허구성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3월 24일 역사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을 온 국민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로 엄숙하게 거행할 것이다.

최근 발전노조 동지들의 가열찬 투쟁과 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3·24 공무원노조 결성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한층 폭압적으로 돌변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3월 13일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전공련 산하 전체 조직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3·24 노조출범식을 마치고자 결의를 다지고 있고, 치밀하게 2선, 3선을 준비함으로써 보다 강도 높은 대정부 압박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의 쟁점은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허용여부가 아니며, 노동기본권 보장의 구체적인 범위와 조직형태, 가입대상, 교섭대상 등 매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정부와 전공련을 필두로 한 노동계와의 밀고 당기는 공방전이 국민들을 앞에 놓고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어느 측이 주도권을 갖고 구체적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인가와 대국민적 공감대를 유리하게 끌어낼 것인가가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연내 입법화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III.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공무원노조는 일반 공무원의 노조결성이 허용되어야 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고, 같은 공무원인 교원에게는 노조를 허용하면서 일반 공무원에게 노조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처사로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일반 공무원의 노조허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의견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국민경제연구소 공동조사에서는 80%가, 같은 해 매일노동뉴스 여론조사팀이 제15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8.6%가, 한국노동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9.7%가, 1998년 전교조와 한길리서치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73.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9년 대구대학교에서 대구와 수도권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4%가, 2000년 10월 부경대(윤영삼, 신갑성)논문에서 공무원의 노조도입여부조사에서도 86.9%로 노조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2001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노총 조사에서는 86.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이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ILO 가입국 175개국 중에서 공무원노조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밖에 없으며, OECD 가맹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공무원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인권사회위원회와 노동단체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한국에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이처럼 국민적 지지여론과 국제적 요구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며 공무원에게는 인간다운 삶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견이 없다.

1.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고성장을 구가하던 때는 민간부문의 임금상승을 우려하여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으며,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임금동결 및 임금삭감을 당하기도 하였다.

민간부문의 보수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마주앉아 불가상승 및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자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결정하지만, 공무원의 보수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기획예산처의 국가예산편성 과정의 일부분으로 검토되어진 다음 행자부를 통하여 국회로 상정되고 국회의 의결로 결정되어지므로 노동자인 공무원의 입장이 반영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결국 사용자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기본적 생계급 정도의 봉급 수준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유행처럼 되어있는 사교육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며, 사회 평균적인 문화욕구도 충족하기 힘든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공무원으로서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인 여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근무의욕 저하와 사기가 저하된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경제적 여건에서 공무원들이 고급의 행정서비스에 전념하기를 기대하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며,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것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결국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봉사행정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는 소국이면서 부존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1965년 독립 당시부터 “깨끗한 정부, 유능한 공무원”이라는 구호 아래 어느 민간기업도 따를 수 없는 높은 보수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였으며, 안정된 신분과 무상의 의료혜택, 확실한 노후연금제도를 통하여 엘리트공무원을 양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인 결과 현재 탄탄한 국가로 아시아에서 우뚝 설 수가 있었다.

싱가포르는 행정부와 의회가 이러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공무원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낮은 대우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여 막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예를 볼 때에도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공무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엘리트집단화 됨으로써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는 곧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2.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민전체에 대한 참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

그간 역대 정권이 정통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여 특별권력관계라는 미명아래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일삼고 맹목적인 복종만을 강요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우리 공무원을 당파적으로 편을 가르고 음성적으

로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며, 공무원들도 이에 편승하여 줄서기 행태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지방자치기 시작되기까지 이 같은 정치적 이용은 심각하여 국민투표, 총선,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집권당은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유권자 성향분석 보고, 집권당 프리미엄을 악용한 집권당 실적홍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음성적인 압력, 심지어는 투·개표 사무종사시 부정행위가 있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집권세력의 국정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간에 일단 정치적으로 반드시 관철해야만 하는 치적사업인 경우에는 실무담당공무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치적쌓기에 몰두하여 밀어부치기식의 전시성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각종 대형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그 때마다 정책결정자가 고급관료를 비롯한 당정고위관료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실무담당 공무원을 볼모로 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선 공무원들이 그간 모래알처럼 흩어진 나약한 개개인의 신분으로는 감당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없었던데 기인한 측면이 있었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강력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공무원 전체가 정치적 외압에 전혀 흔들림 없이 정치적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만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이다.

3. 행정내부 조직의 민주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관료제와 계급제는 상명하복과 일방적 지시문화, 복종의 의무강요는 공직사회를 경직되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공직사회분위기를 방해하여 행정의 비능률, 비효율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기능은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는 하의상달식 의사전달의 통로역할을 하여 관리층과 하위직 사이의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

공직사회는 관행적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라’는 권위적조직에 길들여진 경직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공무원조직 내에서 소외되어 가는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증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관리층과의 상호이해도가 증진되어 정책결정에 대한 하위직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되어 보다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화된 힘을 배경으로 의사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서로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관리층이나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을 때 공무원집단 내부의 민주적 체질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노동조합은 하위직공무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하직급간, 또는 조직내부의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개선하고 내부조직의 비리를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으므로 단체장의 인사전횡이나 선심성행정 낭비성 행사 낭발 등에 대하여 감시하고 내부 압력단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공직자 내부 자정운동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청렴결백한 공무원상을 정립한다.

공무원사회는 조직 내부의 정실인사, 청탁인사, 상명하달식의 지시문화 등으로 조직내부의 불합리한 근무환경 및 제도로 인하여 복마전이니,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치부되어 왔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내부관행을 일소하고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 청렴결백한 공무원사회를

만들 수가 있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조직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과거 국민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정통성없는 역대정권이 근대화를 주도하면서 보수기득권세력과의 결탁에 의한 권력형비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정통성없는 정권이 정권유지차원에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외의존적 경제개발정책과 이와 공생하는 소수 재벌과의 정경유착 및 이에 기생하는 국회의원들의 결탁은 굼직한 권력형비리를 양산해내고 입법, 사법, 행정은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야합을 통하여 국가 총체적인 부정부패를 부채질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부정부패의 악순환은 반부패운동의 주체가 역대 정통성없는 부도덕한 정권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기 때문이며,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부패추방운동과 공무를 직접 담임하는 공직자 내부정화운동 등 아래로부터의 반부패운동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 주원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실질적인 공무를 담임하는 공무원들의 내부개혁이며, 이를 위하여 공직내부의 비리고발자를 보호하는 내부고발자보호 규정과 함께 부당한 권력과 금권 등 온갖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강건한 공무원들의 단체 즉 공무원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

노사정위원회에 제출(2002.2.27.)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정부실무안

△ 입법 주체 : 행정자치부

△ 명칭 :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노조명칭을 배제하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 명칭을 사용

△ 가입대상

▼ 직급 :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

▼ 직종 :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업무" 및 "행정기관의 관리·운영 업무" 수행자 등 제외

-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업무 : 군인, 경찰, 소방, 공안직군 등

-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업무 : 인사, 예산, 비서, 운전, 방호원 등

※ 구체적인 제외범위는 직무분석을 통해 법령 제정시 반영

△ 노동권 인정범위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불인정)

△ 교섭대상 : 입법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근무조건을 대상으로 함(보수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노조전임자 : 전임자 불인정. 다만, 노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의 time-off제 등을 활용

△ 복수노조 :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

△ 입법형식 : 별도 법률로 제정

△ 직장협의회와의 관계 :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계속 존치

△ 조직형태 :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

△ 교섭당사자 : 전국단위는 중앙인사위원장, 지역단위는 광역단체장

△ 조합활동으로 질서위반, 불법활동시 이에 대한 벌칙을 명확히 규정

△ 분쟁조정기구 : 협의권만 인정하므로 별도의 분쟁조정기구 불필요

△ 허용시기 : 연내 입법화하되, 법 제정 후 3~5년의 유예를 두고 시행

미군문제를 다시 본다

기획의도 | 최근 몇 년 사이 주한미군의 감춰진 불합리성들이 전면에 떠오름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관심들은 과거의 '반미' 혹은 '친미' 중심의 이데올로기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현장에서 각론들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노근리가, 매항리가 있고 소파의 개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등이 자리잡고 있다.

혹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한 채 사회적인 금기로 묶여 있던 것들이 '상식화'되는 마당에 이만하면 족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고, 자칫 이런 담론들이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각에서 주한미군의 문제가 실제로 과거 역사의 오점정도로 충분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마디로 '아니오'다.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방류한 맥펠랜드는 여전히 한국사법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미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짜여진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조삼모사식으로 포장되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간의 넘비현상만 부추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쟁점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여전히 현재진행형에 머물러 있고 미래형적인 속성을 띄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에 다시 한 번 돋보기를 대어 무엇이 비뚤어지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보고자 한다.

· 사회 : 김태균(녹색연합 정책실장)

· 발제

주한미군을 다시 생각한다 (최근 주한미군 문제를 중심으로)

- 배종진(미군기지퇴찾기대구시민모임 사무국장)

· 토론

연합토지관리계획의 현황과 과제(의정부를 중심으로)

- 임성수(우리땅미군기지퇴찾기 의정부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주한미군 환경문제의 현황과 과제 - 윤기돈(녹색연합 미군기지 담당자)

테러방지법, 무엇을 위한 법인가

기획의도 |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에서 50년이 넘게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군림해왔다. 그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여 인권을 침해해온 국가보안법은 일반 대중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침해의 소지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국회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보안법을 뛰어넘는 반인권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법은 '테러'라는 모호한 단어로 온 국민을 감시체제하에 두면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법이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의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후 인권시민단체들의 감시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논의를 모아보고자 한다.

· 사 회 : 남상덕(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발 제 : 테러방지법, 무엇을 위한 법인가? - 최병모(천주교인권위원회, 변호사)
· 토 론 : 이상수(새사회연대 대표)

< 발제문 > 테러방지법, 무엇을 위한 법인가?

최 병 모 (천주교인권위원회,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지난 11월 12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은 여론의 반대가 극심하자 두 번에 걸쳐 수정되었으나, 수정된 정부안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첫 번째의 문제는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비밀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위 대테러센터를 통해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문제는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여 일반적인 집회나 시위, 점거 등의 행위마저 테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의 문제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동상임위원회, 대테러센터, 분야별테러사건대책본부, 국외사건테러대책본부 등 수많은 기구가 국가정보원의 주도 아래 결성, 운영될 것이고, 국정원은 국내외의 정보를 모두 독점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정원이 이러한 모든 기구를 장악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국정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이와 같은 방대한 조직과 기구의 신설 및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의 문제는 계엄선포 없는 군병력의 출동과 불심검문,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불고지죄, 통신제한조치의 확대 등 인권침해를 초래할 규정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법안 제2조 테러의 개념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 “국외테러조직 또는 반국가단체와 연계하여 행하는 폭력행위”로 요건을 강화하고, 법안 제16조를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를 위하여 검사를 수사책임자로 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검사의 지휘 아래 두도록 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한 상태이고, 여당은 이와 같은 야당의 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정될 경우에도 법안의 전체적인 골격에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해 본다.

2. 테러행위, 테러단체의 개념(제2조)

국정원은 테러행위의 개념에서 사회적 목적을 삭제하고 정치적, 종교적 목적 등만을 존치하였으므로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나 시위 등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회 및 시위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은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집회 및 시위는 본래 정치적 목적과 함께 사회적 목적을 갖는 것이며, 오히려 정치적 목적 없는 집회나 시위란 생각할 수 없다.¹⁾

3. 대테러센터의 수사권(제5조, 제16조)

법안에 의하면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비공개, 비밀조직으로 운영하면서 테러사건에 대해 독점적인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범죄수사란 본래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가장 엄격하게 법적 규제를 받는 공개된 형사소송절차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수사는 공개된 공식적 조직인 경찰과 검찰의 몫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외정보 및 대내보안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비밀첩보기관일 뿐이다. 첩보기관이란 속성상 비밀리에 도청, 미행, 감시, 위협, 심지어는 불법감금이나 고문과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마저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비밀첩보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허용한다면 과연 무엇이 테러인가 하는 것부터 국정원이 입맛대로 판단할 것이다. 과거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공안사건 수사에서 사건을 조작하고 고문행위까지 저지른 경우가 허다했는데, 그것은 비밀정보기관이 수사를 담당할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에 문체위 수사 김 사건도 그와 같은 하나의 표본일 뿐이다.

국정원은 “테러범 처벌시에는 행위의 결과가 국가안보,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러한 요건은 너무 불명확하여 규제대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²⁾

4. 테러대책기구의 신설 및 국정원의 장악

- 1) * 정치적 목적은 포괄적이어서 사회적 목적을 삭제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또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란 매우 불명확한 개념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주2 참조)
 - *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국가요인, 각계주요인사 등을 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또한 폭행, 상해만으로도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테러개념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 제2조 제1호 나목의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개념도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높다.
 - * 제2조 제1호 라목은 “그 밖의 무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과 다를 바 없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화염병, 각목, 돌맹이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 * 제2조 제2호의 테러단체는 이상과 같은 불명확한 테러의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역시 불명확하다.
- 2) * 참고로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0. 4.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한정합헌결정을 했고(89헌가113), 정부는 1991. 5. 31.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6조, 제7조, 제8조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잠입, 탈출, 찬양, 고무 등의 이적행위 또는 회합, 통신을 한때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했으나, 그 이후에도 재판의 실무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요건의 변화에 전혀 관계없이 예전처럼 광범위하게 적용 처벌되고 있다.
- * 제5조 : 대테러센터는 ①국정원에 두고, 그 조직 및 정원을 모두 국정원장이 결정하므로 결국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장악할 것이다. ②그 조직 및 정원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비밀조직이다. ③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만 규정하였으므로, 국정원 직원이나 군인이 조직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④대테러센터가 관장하는 업무는 정보수집, 지원, 기획, 조정, 정보협력, 심지어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나아가 수사권까지 포함하여 너무나 광범위하다. ⑤법안 16조에서는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므로, 결국 국정원은 테러에 관한 한 민간 및 군인 전부에 대하여 수사권을 완전히 독점할 것이다. 이것은 곧 나치 치하의 게슈타포, 구소련의 KGB와 같은 비밀경찰의 창설에 해당한다.
 - * 제17조 : 테러의 개념에 단순한 폭행, 위협, 방화 등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민족적 목적으로 폭행을 할 경우 테러에 포함되므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이상의 목적으로 일정한 대상자에게 단순한 폭행 등을 행할 경우에도 테러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될 것이다.

법안에 의하면,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 동상임위원회, 대테러센터, 분야별테러사건대책본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지역 및 공항, 항만별 대테러대책협의회 등을 조직 운영하게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기구의 수는 모두 30여 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구들은 결국 정보와 수사권을 독점한 국정원의 주도 하에 설치, 운영될 것이고, 국정원의 권한은 막강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구의 설치에는 막대한 국고의 지출을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테러대책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지휘체통의 확립에는 장애가 될 것이다.³⁾

5. 계엄선포 없는 군병력 출동,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불고지죄

계엄선포 없이 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의하는 것만으로 군병력을 출동시켜 불심검문, 보호조치 기타 경찰의 직무를 행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 밖에 외국인에 대한 감시, 출국조치, 통신제한조치 등의 확대 역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⁴⁾

6. 합리적인 테러방지대책

그러면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예방, 진압 및 수사할 권한이 있고, 테러방지를 위한 특수부대까지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경찰의 관할하에 지휘명령체통을 일원화하고, 특수부대의 기량을 높이며, 국정원은 대외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테러대책이 될 것이다.

- 3) 법안에 의해 창설될 기구 및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테러센터(제5조, 제16조)
 - ②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동상임위원회(제4조)

상임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와 수사권을 독점한 국정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 ③ 분야별테러사건대책본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제6조)

국가기구만을 비대하게 할 뿐 실효성은 의문이다. 테러는 분야별로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억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관할아래 통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국방장관, 행자부장관, 경찰청장의 특수부대, 구조대 설치(제7조)

경찰특수부대로 통합관리하고, 대통령-행자부장관-경찰청장-특수부대의 통일적 지휘체통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군대 내부의 테러문제는 군 내부에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군병력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전국가적 또는 국지적인 비상사태가 생긴다면 그것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일이다. 국정원의 역할은 협력관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⑤ 대테러대책협의회(제8조)

이 규정대로라면 특별시, 광역시, 도와 공항 및 항만 등에 함께 15개 내지 20개의 대테러대책협의회가 구성될 것이다. 테러대책은 경찰이 통일적으로 대처할 일이며, 이 역시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의하면 테러에 관한 모든 정보와 수사권을 국정원이 장악하고 있는데, 대테러대책협의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역할은 결국 국정원 파견공무원 등의 장악하에 있는 테러대책기구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종래 비난의 표적이 되었던 공안사건에 관한 관계기관대책협의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⑥ 관계기관의 장의 대책수립, 대책반 편성의무(제9조, 제10조)

특별한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한 의무이며, 주로 경찰이 통합관리할 일이다.

- 4) ① 제11조 : “테러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의 개념은 불명확하다.
- ② 제15조 : 계엄선포 없는 군병력 동원 및 군병력에 의한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6. 결 어

지난 9월 11일 미국 무역센터 테러사건 이후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주도하의 공안정국이 형성된 상황이다. 국정원의 실제적인 목적은 이 시기를 틈타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과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국가보안법 외에 또 하나의 칼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그동안 사회의 민주화로 인하여 축소된 국정원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이와 같은 기도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고 정보기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에도 국정원의 직무에는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의 권한이 포함되어 있어(국가정보원법 제3조), 위 규정만으로도 테러사건에 대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밖에도 국가보안법위반 범죄 등 많은 종류의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국정원이 이와 같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자체로서도 수많은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어 왔다. 국정원이 그 위에 테러사건의 수사권까지 장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에 반하여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권한은 엄격하게 대외정보의 제공과 대적정보활동에 한정되어 있다.⁵⁾

5)* 우리나라 국정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국정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형법중 내란, 외환죄, 군형법중 반란죄 등,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범죄),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등에 관한 업무”
현재도 국정원이 위와 같이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결과 그동안 국정원에 의한 인권침해사태가 빈발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 참고로 미국 CIA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미국 중앙정보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미합중국 국가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든 자들을 지원한다.

- 정확하고, 증거에 입각하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적시의 국가안전에 관련된 대외정보의 제공, 그리고,
- 대통령의 지휘를 받은 대외정보 및 국가안전에 관련된 대적정보 활동, 특수활동, 그리고 그 밖의 기능의 수행

(Our Mission

“We support the Presiden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all who make and execute US national security policy by:

- Providing accurate, evidence-based, comprehensive, and timely foreign intelligence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 Conducting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special activities, and other functions related to foreign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as directed by the President.)

공동선언문 (별지)

폐회식

한울

한울의 주요 도서 목록

디지털시대, 다시 쓰는 경제학/최배근 지음/신국판/2002.3.20발행/324면/14,000원/경제학
 '역사와 국적이 있는 경제학'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쓴 새로운 경제학 강의. 디지털혁명에 따른 새로운 경제 현상들을 경제원론의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에 대한 영미경제학적 처방의 오류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혁명이 요구하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내용과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조성숙 지음/신국판/326면/2002.3.20발행/15,000원/
 여성 홀로 책임져온 모성역할을 남성 및 사회, 국가가 공유하며 보살핌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모성이데올로기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억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티글리츠의 경제학/조지프E.스티글리츠지음/김균·백영현·안현호·이병천윤김/국배변형판/856면/2002.3.15발행/29,000원/
 2001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가 쓴 경제학 입문서로, 현대 경제학의 원리와 현대 경제의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현실의 시장경제가 정보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역설하며, 시장의 불안정성과 조절실패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의 세계화/프랑수아 세네 엮음/서익진 옮김/신국판/316면/2002.3.10발행/16,000원/경제학·정치학
 금융의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제공해주며, 특히 1960년대 오일쇼크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세계경제 잠식의 기원과 역사, 현재를 보여주며 이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외환위기의 진정한 원인과 그 세계사적 의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탈분단의 정치경제학과 사회구성/정성기 지음/신국판/362면/2002.1.20.발행/15,000원/사회과학
 민족·체제분단문제와 사회구성체 문제, 지역문제를 별개로 보는 기존의 인식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일 철학을 담고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넘어 '새로움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의 절박한 생존 과제로 삼아 탈근대, 탈자본주의, 탈사회주의, 그리고 아래로부터 '사회 만들기'를 추구한다.

문화민주주의/데이비드 트렌드 지음/고동현·양지영 옮김/신국판/362면/2001.12.25발행/14,000원/1980~1990년대 미국의 문화적 지형을 분석하면서, 오늘날 예술, 미디어, 오락산업, 교육 등 각 부문에서 날로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그러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요구되는 문화적 작업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책이다. 영화, TV, 비디오, 인터넷, 대중음악, 예술, 교육 등 문화영역의 풍부한 역사적 사례와 최근 문화적 논쟁들을 담은 흥미로운 얘기들이 펼쳐진다.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2/유팔무, 김정훈 엮음/신국판/434면/2001.6.15발행/15,000원/사회과학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전개된 시민사회 이론들의 주요 쟁점들과 2000년 총선국면까지의 시민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손호철, 김성국, 유팔무, 조희연 등 진보적 사회운동 분야의 중견학자들간의 반론·재반론의 토론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1/유팔무·김호기 엮음/신국판/392면/1995.5.16발행/13,000원/ 90년대 들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시민사회 논쟁을 총괄하면서 진보적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이론적·실천적 차원에서 모색한 책.

- <마누엘 카스텔 저작 시리즈>
- 1. 정보도시/최병두 옮김/양장신국판/440면/2001.10.20발행/24,000원
 - 2. 네트워크사회의 도래(근간) 3. 정체성의 힘(근간)
 - 4. 밀레니엄의 종언(근간) 5. 인터넷갤럭시(근간)

(근간)의사는 없다/안종주 지음/현직 의료전문 기자가 쓴, 한국 의료계와 의사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서.
 (근간)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김호석 지음/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그것의 실천방법을 모색하는 책.
 다시 그림시에게로(개정판)/칼 보그 지음/강문구 옮김/신국판/250면/2001.12.25발행/12,000원/
 e-토피아/윌리엄 미첼 지음/강현수 옮김/신국판/272면/2001.12.5발행/12,000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스태판 플롤·에덤 스위프트 지음/김해성·조영달 옮김/신국판/448면/2001.10.30발행/20,000원/
 희망의 공간/데이비드 하비 지음/최병두 외 옮김/신국판/392면/2001.11.10발행/18,000원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1/이옥지 지음/신국판/586면/2001.10.15발행/25,000원/
 한국여성노동자 운동사 2/강인순 지음/신국판/498면/2001.10.15발행/20,000원/
 문화와 권력으로 본 도시탐구/레니에 쇼트 지음/이현옥·이부귀 옮김/크라운판/504면/2001.9.15발행/24,000원/
 녹색사회의 탐색/조명래 지음/신국판/432면/2001.8.20발행/20,000원/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김삼오 지음/크라운판/404면/2001.7.20발행/18,000원/
 개혁을 위한 연대/이진모 지음/변형국판/225면/2001.6.10발행/12,000원/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아담 셰보르스키 지음/김태일·지은주 옮김/신국판/310면/2001.4.10발행/12,000원/
 세계사적 나침반은 어디에/참여연대 참여사회아카데미 엮음/신국판/296면/2001.2.10발행/12,000원/
 20세기 한국을 돌아보며/참여연대 참여사회아카데미 엮음/신국판/258면/2001.2.10발행/12,000원/

치열한 인문정신이
빛나는 창비의 책,
우리 학문의 내일을 일구어갑니다.

영미문학의 길잡이

영미문학연구회 엮음
1권 영문학/2권 미국문화와 비평이론
제34회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값 각권 25,000원



서양근대철학

서양근대철학회 엮음
베이컨, 데카르트에서 칸트까지
근대철학 500년을 국내 연구자들이 정리
값 16,000원



쉴크로드학

정수일 지음
시사저널 선정 '2001년의 저자'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 '올해의 책 베스트 10'
값 43,000원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전4권

A. 하우스 지음/백낙청 외 옮김
문학예술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하우스의 명저
값 각권 9,800원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상·하

E. P. 톰슨 지음/나종일 외 옮김
2000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값 각권 30,000원



역사·사회과학

20세기 우리 역사 강만길 지음 값 12,000원
고쳐 쓴 한국근대사 강만길 지음 값 8,000원
고쳐 쓴 한국현대사 강만길 지음 값 9,000원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송·하 조동길·한영우·박진승 엮음
값 각권 12,000원
고려의 황도 개경 한국역사연구소 지음 값 15,000원
천년의 왕국 신라 김기홍 지음 값 12,000원
한국전쟁 왜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 옮김 값 16,000원
동아시아의 귀환 백영서 지음 값 13,000원
흔들리는 분단체제 백낙청 지음 값 7,500원
과학의 사회적 사용 P. 부르디외 지음 조홍식 옮김 값 6,000원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김동춘 지음 값 13,000원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I. 월러스틴 지음 나종일 외 옮김
값 7,000원
NGO의 시대 조호재 번역 값 15,000원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강만길·성재경 엮음 값 50,000원

여성·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M. 미스·V. 시바 지음 손덕수 외 옮김 값 13,000원
페미니스트 R. 애반스 지음 정현백 외 옮김 값 13,000원
남성의 과학을 넘어서 우조영란·홍성욱 엮음 값 9,000원

문학사·문학이론

민족문학사 강좌 송·하 민족문학연구소 엮음 값 각권 10,000원
한시 미학과 역사적 진실 송재소 지음 값 28,000원
한국고전시가선 임형택·고미숙 편역 값 12,000원
벽초 홍명희 연구 강영주 지음 값 29,000원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M. 바흐친 지음 전승희 외 옮김 값 13,000원
문학이론 입문 T. 아달린 지음 김명현 외 옮김 값 10,000원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부과 편역 값 4,500원
독일의 현대문학 전영애 지음 값 16,000원

과학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이필걸 지음 값 9,000원
근현대 한국사회의 과학 강영식·김근배 엮음 값 13,000원
2500년 과학사를 움직인 인물들 로이 포터 엮음 조숙경 옮김
값 9,800원

(주)창작과비평사

www.changbi.com 718-0541~4

NPO/NGO 시리즈



한국의 시민사회, 현실과 유토피아 사이에서

김호기 지음
신국판 무선제본 / 306쪽

시민사회론의 다양한 조류와 한국적 함의, 한국 NGO의 성취와 한계,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등을 간결한 문체로 접근하고 있다.

NGO와 현대사회

박상필 지음
신국판 양장 / 546쪽

본격적인 'NGO학' 입문서. NGO/NPO의 개념정리, 현대사회에서 NGO의 역할, 재정, 정부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NGO 리더십, 직능단체, 종교단체, 시민운동 등으로 연구지평을 확장하여 고찰하였다.

한국의 여성환경운동

문순홍 편저
신국판 양장 / 287쪽

우리나라 여성환경운동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고, 여성환경운동의 동기, 활동, 장애요인, 극복과정을 유형별로 정리해 운동의 질적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는 참여와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로 간다

캐서린 아이작 지음 / 조희연 옮김
4*6배판(변형) 무선제본 / 642쪽

다양한 시민참여 사례와 함께 미국의 시민·사회운동의 전개과정을 소개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참여기법과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박원순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기행

박원순 지음
신국판 무선제본 / 441쪽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 지식인들을 만난 경험과 감상을 꼼꼼히 기록한 기행문. 한국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수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잡이.

NPO란 무엇인가

레스터 설러먼 지음 / 이형진 옮김
4*6배판(변형) 무선제본 / 265쪽

NPO의 특징과 유형, 그리고 현주소와 미래방향 등을 해설한 입문서. 다양한 최근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누구나 비영리부문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2001 NGO리포트(2000.1-2001.4)

김동춘 엮음
크라판 양장 / 612쪽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경과와 쟁점을 각 영역별, 이슈별로 정리해 소개하고 아울러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모아 수록하였다.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시민사회포럼 외 엮음
신국판 양장 / 423쪽

시민운동단체의 정치참여,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등 민감한 이슈를 놓고 국내 50여 명의 관련 학자와 전문가, 시민운동가들이 난상토론한 결과를 묶어냈다.

NGO란 무엇인가

김동춘 외 지음
4*6배판(변형) 무선제본 / 228쪽

'NGO'를 시민사회와 NGO, 활동분야와 유형, 글로벌 시민사회와 NGO, 주요국의 현황과 제도,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역사와 전망, 시민교육 등 총 6장으로 갈무리해 정리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NGO

주성수 지음
신국판 무선제본 / 287쪽

세계화에 수반되는 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거버넌스체제의 건설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국가, 시장, 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아름다운 제휴,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만났을 때

엘리시걸, 설리사가와 지음 / 이형진 옮김
신국판 무선제본 / 470쪽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유지 발전시켜나감에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선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문명전환을 꿈꾸는 새로운 시민운동

정수복 지음
신국판 양장 / 438쪽

1990년대 이후 한국시민운동의 발생과 전개,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민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시민없는 시민운동'이 '시민 참여형 시민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21세기 세계속의 서원대학교

벤처바람~ 연구바람~ 동아리바람~ 외국어바람~ 유학바람~ 특성화바람~
공모전바람~ 인터넷바람~
이 모든 바람들을 '서원대 신실용주의 교육'이라 부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다"

분야별 특성화 교육, 수준 높은 연구, 과감한 교육 개혁,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원대의 자기 혁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남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보다 남다르고 창의적인 젊은 인재를 양성합니다.

신교육 패러다임의 주창으로 진정한 학생중심의 학사 행정, 디지털 캠퍼스 구축으로 최첨단 하이테크 면학 환경 조성, 최고의 전산망 구축은 물론 온라인 원격강의, 재택수업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최첨단 하이테크 신실용주의 교육으로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기 혁명을 완성해갑니다.

서원대학교에서
젊음의 혁명을 시작하십시오.



서원대학교

SEOWON UNIVERSITY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나눔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사랑엔 장벽이 없습니다"

대구대학교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2만 대학 가족들 사이에도 장벽이 없습니다.
나이, 인종, 성, 세대에 관계없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을 뛰어 넘어
함께 배우며 어우러지는 사랑의 캠퍼스입니다.

자유가 살아 숨쉬는 참대학.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밝고 희망찬 세상만들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대구대학교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반듯하게

한신대학교는 진보정신을 바탕으로 참사람을 만듭니다.



진보적 지식인의 터전 - 한신대학교

61년 전통, 진보적 학풍의 대명사인 한신대학교는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선생 등 수많은 선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한신대학교는 실천적, 이론적 방면에서 일가를 이룬 교수진들이 비판적이고 창조적 사고, 자유롭고 소신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진보정신으로 도전하는 한신만의 자랑입니다.

진보적인 학교운영과 학생활동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 민주대학 컨소시엄 주관대학 / 중소기업청 지정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운영대학 / 일본에서 현지 조사 수업 / 중국 현지 자매대학에서 학기운영 및 다양한 연계전공 운영 / I.T. 관련학과(e-비즈니스학 전공, 소프트웨어학) 추가 신설 / 전공학위 3개까지 취득 / 동아리활동, 사회봉사활동 학점화 / 무학점 무료강의 실시 / 국내 최초 강의평가제 실시 / 국내 최초 교수 연구년제 실시 / 국내 유일의 4차 협의회 운영(학생, 교수, 노조, 학교운영진) / <한신벤처창업연구회> 우수 창업 동아리 선정 / <IQ뱅크> 최우수 권장 사이트 선정 / 사이버 대학 운영 / 고등학교 담임교사 추천 특별전형 / 교과목 담당교사 추천 특별전형 / 대안학교장 추천 특별전형 / 민주화 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 자연친화적이고 공원같은 캠퍼스 / 2003년 경수전철 중점 학교앞 이전

고교생을 위한 열린교육

고교생과 함께 하는 러시아 연해주 농촌활동 / 전국 고교생 대상 '청소년 문학상' / 고교생 3:3 길거리 농구대회 / 전국 고교생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한신대학교는 참사람을 만들기 위해 고교생을 위한 열린교육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Tel. 031)3706-500 <http://www.hanshin.ac.kr>



성공회대학교

■ 한 사람의 특별한 지도자보다
더불어 사는 열 사람을
키우고자 합니다.

인권과 평화의 대학

무슨 별?

대한민국 밤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 하나
21세기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상지의 별입니다
상지의 별은 북극성처럼
여러분을 세계의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당당한 중심대학 -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www.sangji.ac.kr
강원도 원주시 우신동 660 TEL (033)7300-114



무궁화꽃이 피는 덕성의校花교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민족사학 덕성을 아시나요?"
"덕성의 창학(創學) 이름은 근화였어요"
"일제 강점기 근화는 무궁화를 뜻한다해서 교명(校名)을 강탈당했죠"
"덕성은 그러나 교화(校花)만은 무궁화를 고수했어요"
"80여년간 덕성은 무궁화를 피워왔지요, 언제나 당당한 그 모습으로..."
"오늘도 덕성에는 무궁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 탄탄한 재정, 내실 있는 교육으로
여인천하(女人天下)를 꿈꾸어온 덕성여자대학교

2001년 대교협 학문분야 평가 : 디자인분야 최우수대학, 교양교육분야 우수대학,
2001년 교육부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 : 유아교육과 1위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www.duksung.ac.kr